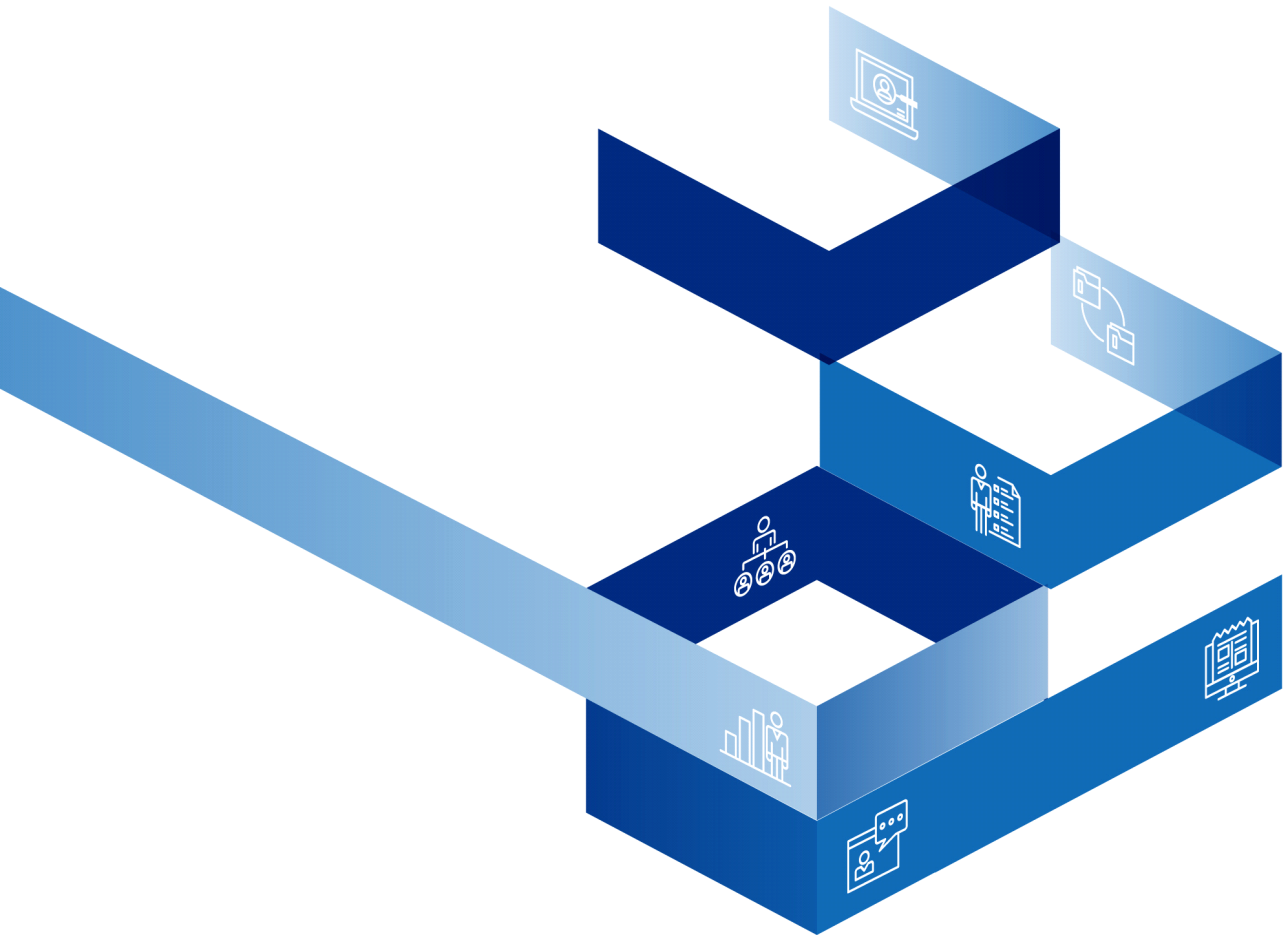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2020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3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8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15
제1절	개요	15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15
	2. 중재부의 구성	16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7
	1. 청구현황	17
	2. 청구권별 현황	17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18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19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19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1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2
	1. 개요	22
	2. 피해구제율 현황	23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3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7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8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9
	7. 중재부별 처리결과	30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31
	9.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 운영	33
제4절	평가	35

제2장	시정권고	37
제1절	개요	3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38
	1. 시정권고 현황	38
	2. 침해 유형별 분석	38
	3. 매체 유형별 분석	48
	4. 시정권고 결정문 양식 개선	49
제3절	평가	50
제3장	선거기사심의	51
제1절	개요	51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51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5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4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54
	2.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59
	3. 선거기사심의제도 연구 강화	60
	4. 선거기사심의시스템 도입·운영	61
제3절	평가	62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67
제1절	개요	67
제2절	주요 실적	68
	1. 상담경로	68
	2. 상담 처리결과	68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69

목차

4. 상담매체 유형	69
5. 상담신청인 유형	70
6. 상담대상 유형	71
7. 피해구제수단	72
제3절 평가	72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주요 추진실적	76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76
2. 언론인 대상 교육	77
3. 법조인 대상 교육	79
4. 대학생 대상 교육	80
5. 청소년 대상 교육	81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82
7. 일반인 연수	83
8. 교육콘텐츠 개발	83
제3절 평가	86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89
제1절 개요	8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0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90
2. 토론회 개최	97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101
제3절 평가	102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104
제1절 개요	104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05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105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09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110
제3절 평가	111
제5장 홍보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4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114
2. 광고 집행	115
3.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115
4.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기능 개선	117
5.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117
제3절 평가	118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20
1.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리뉴얼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20
2.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22
3. ‘온택트’(ontact) 시대 맞춤형 내부교육 실시	122
4. 사회공헌활동	124

목차

제4부 2021년도 업무계획

제1장 2021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29
제2장 2021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35

부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143
2. 설립근거 및 기능	153
3. 연혁	153
4. 기구	155
5. 2020년 예·결산 현황	157
6. 제21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57
7. 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159
8. 2020년 주요 발간물 목록	160

표목차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17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17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8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19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1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2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2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3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4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5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5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6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6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6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7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8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9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0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31
표 21	코로나19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34
표 22	2020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38
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39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9
표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제재결정 현황	56
표 26	상담경로	68
표 27	상담 처리결과	69
표 28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69
표 29	상담매체 유형	70
표 30	상담신청인 유형	71
표 31	상담대상 유형	71
표 32	피해구제수단 상담	72
표 33	2020년도 교육 실시현황	76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77
표 35	<언론인 전문연수> 실시 현황	77
표 36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78
표 37	<1인 미디어 연수> 실시 현황	79
표 38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79
표 39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80
표 40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실시 현황	81
표 41	<맞춤형 위탁연수> 실시 현황	83
표 42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83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위원회는 인터넷 미디어 중심으로의 언론환경 변화 및 언론조정신청사건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심의시스템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연구사업 진행, 자원의 운용과 관리 효율성 확보를 통한 업무 능력 극대화 등을 목표로 2020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조정사건처리의 실효성·신속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미디어로 인한 권리침해 해소방안 마련 등을 위해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둘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미디어 대상 시정권고 심의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선거 보도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추진, 디지털 심의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표로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 및 실효적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심의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교육 및 미디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진행 등을 위해 <미디어 환경 변화·이용자 요구에 발맞춘 교육·연구사업 진행>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가하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효율적인 인적 자원 운용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전자업무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통한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자원 운용·관리 효율성 확보를 통한 업무 능력 극대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전파로 위원회가 계획했던 국내·외 사업들 중 일부가 수정되거나 연기·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돌발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해 ‘코로나19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고, 언론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교육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온택트(Ontact) 교육 플랫폼’을 개설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비대면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상술한 중점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쉽 없이 달렸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제20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중재위원 정원 증원 등)이 재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위원회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결과,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당 법안들이 신속하게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신(新) 유형 미디어(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언론 보도 현황 파악 및 피해의 일괄 구제를 위해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유통된 기사 및 블로그 복제 기사를 원 기사와 함께 조정신청 할 수 있는 방안 안내, 신(新) 유형 미디어 및 인터넷 기반 매체 특성에 부합하는 조정사건처리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피해구제보도문 작성방안 연구 등을 실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를 지정·운영(2020. 3. 서울제5중재부)하여 성과[2020. 12. 31. 현재 90건 접수 / 피해구제율 89.0%]를 거두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 인격권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이슈 발생과 함께 제기되는 언론보도 관련 인격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 역대 최대 언론조정신청건수(3,924건 / 2014년 및 2015년 세월호 관련 대량 언론조정신청사건 제외)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정신청서 작성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접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접수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계간 <언론중재> 등 학술 발간물 기획을 통해 제20대 국회 미디어 관련 입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언론법 관련 이슈(언론폐해구제제도 개선 및 변화,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방송법 개정 쟁점 등)에 대한 학술 결과물을 도출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언론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도 변화 양상 및 논의점을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대비하였다.

2.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 and 실효적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심의시스템 강화

-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 및 인터넷 기반 미디어 중심의 언론 환경에 부합하는 시정권고제도 운용을 위해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수용 여부(수용률)를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문 송부 시 기사수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문구를 제시하는 등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실효적인 심의제도를 운영하였다.
- 디지털 심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주력하는 한편, 디지털 심의시스템의 본격적인 활용으로 시정권고소위원회 전자심의 실시, 시정권고 및 선거기사심의 관련 각종 자료 및 통계 활용 편의성 증대,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이용한 안건회의 실시 등 업무 능률 제고가 가능해졌으며, 행정 업무에 투입되던 자원의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고 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상승하였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당시 처리안건(총 55건)의 2배 이상(총 128건 / 자체심의 116건, 시정요구심의 12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특

히 새로운 유형의 공정성·형평성 위반 안건(출판기념회 및 선거홍보포스터 등 후보자의 홍보 이미지를 기사에 그대로 게재하는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심의규정 개정에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선거보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3. 미디어 환경 변화·이용자 요구에 발맞춘 교육연구사업 진행

- 언론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강 기회가 부족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 대상 교육, 저(低) 연차 기자 대상 언론법제 관련 내용 재교육,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인격권 및 미디어 윤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수요 발굴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법’, ‘언론보도상의 여성, 장애인, 코로나19 관련 차별·혐오 이슈’ 등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함으로써 뉴스·정보 제작 및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대상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한편, 반복 교육 수강자를 위해 최신 조정례 및 판례 등을 활용한 수준별 심화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원회 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이어나가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무료로 전 국민에게 교육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면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육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대상별·주제별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대면 교육 접근성이 낮은 교육 수요층도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201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0년 학술지 계속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등재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명실상부 언론법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을 재확인하였으며, 학술 전문 연구지(<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등)를 통해 ‘디지털 교도소’, ‘공익적 폭로’, ‘배드파트너스 판결’, ‘넷플릭스법’, ‘알고리즘’ 등 언론법제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게 접근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논의점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및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을 기획·발간하여 언론법제 관련 이슈가 되었거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최신 동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다.

4. 자원 운용·관리 효율성 확보를 통한 업무 능력 극대화

- 직무교육 일환으로 전문성을 지닌 사무처 직원의 역량을 활용, '언론조정신청 사건 변화 유형과 특이 사례',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결과', '최근 언론 중재법 개정 발의안의 주요 내용' 등을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실무지식 배양 및 업무 역량을 제고하였다.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 중 전환채용대상자를 엄정하게 평가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고, 2020. 7. 이후부터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채용절차 진행)함으로써 인력운용의 안정화 및 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시정권고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였다.
- 2019년 구축이 완료된 디지털 심의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화 및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 향상시켰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조사관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간편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재위원업무시스템을 조사관업무시스템과 통합·구축한 '조정중재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사관 및 중재위원의 시스템 이용 및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 편의를 제고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각종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달성, 심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원활한 언론조정신청사건 처리를 지원하였다.
- 제주사무소 이전 및 충북사무소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 쾌적한 민원인 대기 공간 설치 및 직원 업무 공간 개선 등이 이루어져 민원인 등 방문자 및 심리참석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해당 공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임금피크제전문직 확대에 대비하여 사무 공간 마련 및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 능력 및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 코로나19 팬데믹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

-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에 따라 확진자 동선 및 이동경로 노출로 인한 피해 상담에 적극 호응하여 조정절차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물론, 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사례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국가적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관련 업무 지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 근무 강도를 확립하였으며, 조정심리 및 접수상담, 일상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등 각종 방역 물품 구입, 아크릴 가림막 설치, 전자명부 도입 및 활용, 정기 방역 실시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2. 언론조정중재 관련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 언론조정중재 통계와 관련,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통계 분류코드를 삭제하여 통계데이터의 밀도를 제고하는 한편, 언론조정실무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현황 자료의 항목 등을 추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언론조정중재 통계데이터 관련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다.

3. 심의 실무역량 강화 지원 및 심의제도 연구 활성화

- 서울사무처 및 각 지역사무소에 배치된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실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시정권고제도 이해, 시정권고소위원회 상정안건 해설, 시정권고 모니터링 관련 의견청취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판례, 선관위 유권해석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선거기사 실무제요」를 제작하고,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을 개정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맞추어 일반심의기준, 세부심의기준별 위반 유형으로 재정비하는 등 선거기사심의 실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거기사심의제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4. 언론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내 주요 학술정보서비스 기업 5곳, 학술정보 검색엔진서비스 2곳을 통해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전호에 대한 원문 다운로드 및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등 충실한 연구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지역 거주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광고·홍보활동 강화

- 대구사무소 기획 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경북 기자협회와 연계한 ‘대구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공동개최하고, 지역 특성 및 현안을 고려한

지역 저널리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부산·경남·울산지역 언론인 대상 공정한 선거보도 관련 워크숍)하는 등 지역사무소 주도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 창출을 추진하였다.

- 지역 광고 예산을 신설하여 광주·강원·제주지역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이 많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사무소 위치 안내를 신속·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지역 거주 당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원회를 통한 언론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 대외홍보지 <언론사람>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의 정기 기고를 게재하여 디지털 미디어 분야 관련 최신 정보와 쟁점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한 조정 및 시정권고 사례, 국내·외 언론 관련 판례 등을 웹툰이나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위원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등 위원회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향상하였다.

6. 체계적·효율적·안정적인 유·무형 자원 관리 및 운용

-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 업무수행의 중요도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물품 구입 및 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물품 담당 부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한정된 물품 구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물적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외부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업무시스템에 접속·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추가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모바일 기반 그룹웨어 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인증 수단을 도입하여 어디서나 간이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인해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법의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1981년 위원회 설립 이후 40년 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 44건에 불

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역대 최대(세월호 관련 대량신청건 제외)인 3,924건에 달하였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06년 1천 건을 돌파(1,087건)했고,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된 2009년에는 1,57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천 건(2,205건), 2015년에는 3천 건(3,319건 / 세월호 관련 대량신청건 제외)을 넘어섰다. 아울러 조정사건의 매체유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 매체 대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조정건수의 약 70% 중반(2020년 75.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신속히 구제·회복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와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함께 맞물리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전후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정제도 자체가 승패가 갈리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 화해를 통해 원만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각 중재부가 언론분쟁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이외에도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중재 역시 법원을 통한 소송과 달리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다. 다만,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서울제5중재부)를 지정·운용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전담중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보도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서울에 8개 중재부를, 지역에는 10개 중재부를 운영(총 18개 중재부)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20년 역대 최대(세월호 관련 대량신청건 제외)인 3,92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2019년 3,544건보다 10.7% 증가한 수치이다.

표 1 |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18. 1. 1. ~ 2020. 12. 31.)

구 분 \ 연 도	2018	2019	2020
청 구 건 수	3,562	3,544	3,924

2. 청구권별 현황

2020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983건으로 전체 조정사건의 절반 이상인 50.5%를 기록했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1,132건(28.8%), 반론보도청구 695건(17.7%), 추후보도청구 114건(2.9%)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정정보도청구 비율은 4.7%p, 반론보도청구 비율은 3.4%p 각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청구명 \ 연 도	2018	2019	2020	합 계
정 정	1,781 (50.0)	1,623 (45.8)	1,983 (50.5)	5,387 (48.8)
반 론	419 (11.8)	506 (14.3)	695 (17.7)	1,620 (14.7)
추 후	287 (8.1)	152 (4.3)	114 (2.9)	553 (5.0)
손 배	1,075 (30.2)	1,263 (35.6)	1,132 (28.8)	3,470 (31.5)
계	3,562 (100)	3,544 (100)	3,924 (100)	11,030 (1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2,102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96건(15.2%), 신문 506건(12.9%), 방송 465건(11.9%), 뉴스통신 247건(6.3%)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2019년 대비 58.0%에서 53.6%로 4.4%p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신청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2019년 대비 11.0%에서 15.2%로 4.2%p 상승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2018년 77.4%, 2019년 74.2%에 이어 2020년에도 75.1%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 또는 매개되는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 요구가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3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8. 1. 1. ~ 2020. 12. 31.)

매체유형		연 도			
		2018	2019	2020	합 계
신문	일간신문	306 (8.6)	357 (10.1)	384 (9.8)	1,047 (9.5)
	주간신문	145 (4.1)	105 (3.0)	122 (3.1)	372 (3.4)
방 송		331 (9.3)	436 (12.3)	465 (11.9)	1,232 (11.2)
잡 지		19 (0.5)	12 (0.3)	4 (0.1)	35 (0.3)
뉴스통신		192 (5.4)	187 (5.3)	247 (6.3)	626 (5.7)
인터넷신문		2,141 (60.1)	2,055 (58.0)	2,102 (53.6)	6,298 (57.1)
IPTV		2 (0.1)			2 (0.0)
인터넷뉴스서비스		421 (11.8)	388 (11.0)	596 (15.2)	1,405 (12.7)
기 타		5 (0.1)	4 (0.1)	4 (0.1)	13 (0.1)
계		3,562 (100)	3,544 (100)	3,924 (100)	11,030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3,778건(96.3%)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상 손해가 68건(1.7%), 초상권 침해가 45건(1.1%)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명권 침해 12건(0.3%), 사생활 침해 7건(0.2%), 음성권 침해 6건(0.2%), 기타가 8건(0.2%)으로 각 1% 미만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 중 재산상 손해로 인한 조정신청의 비중이 2019년 대비 0.4%에서 1.7%로 1.3%p 상승했다.

표 4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8	2019	2020	합 계
명예훼손	3,451 (96.9)	3,478 (98.1)	3,778 (96.3)	10,707 (97.1)
초상권 침해	59 (1.7)	28 (0.8)	45 (1.1)	132 (1.2)
음성권 침해	2 (0.1)	5 (0.1)	6 (0.2)	13 (0.1)
성명권 침해	19 (0.5)	7 (0.2)	12 (0.3)	38 (0.3)
사생활 침해	6 (0.2)	5 (0.1)	7 (0.2)	18 (0.2)
재산상 손해	18 (0.5)	15 (0.4)	68 (1.7)	101 (0.9)
기 타	7 (0.2)	6 (0.2)	8 (0.2)	21 (0.2)
계	3,562 (100)	3,544 (100)	3,924 (100)	11,030 (1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0년 조정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개인에 의한 조정청구가 2,187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업체 688건(17.5%), 일반단체 375건(9.6%), 지자체 152건(3.9%), 공공단체 140건(3.6%) 등의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개인, 종교단체, 기업체 및 교육기관의 청구건수는 증가한 반면, 일반단체와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신청인 \ 연 도	2018	2019	2020	합계
개 인	2,091 (58.7)	1,934 (54.6)	2,187 (55.7)	6,212 (56.3)
국가기관	68 (1.9)	66 (1.9)	108 (2.8)	242 (2.2)
지 자 체	137 (3.8)	124 (3.5)	152 (3.9)	413 (3.7)
공공단체	103 (2.9)	117 (3.3)	140 (3.6)	360 (3.3)
일반단체	499 (14.0)	532 (15.0)	375 (9.6)	1,406 (12.7)
종교단체	86 (2.4)	45 (1.3)	98 (2.5)	229 (2.1)
기 업 체	442 (12.4)	578 (16.3)	688 (17.5)	1,708 (15.5)
언 론 사	61 (1.7)	74 (2.1)	51 (1.3)	186 (1.7)
교육기관	75 (2.1)	74 (2.1)	125 (3.2)	274 (2.5)
계	3,562 (100)	3,544 (100)	3,924 (100)	11,030 (1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0년 전체 조정건수 3,924건 중 2,850건(72.6%)은 서울 8개 중재부가, 1,074건(27.4%)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중재부에서는 경기중재부 413건(10.5%), 대구중재부 117건(3.0%), 전북중재부 103건(2.6%), 광주중재부 100건(2.5%) 순으로 조정사건처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중재부의 접수·처리건수가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경기중재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상당히 넓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언론사 역시 여타 지역과 비교해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6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8. 1. 1. ~ 2020. 12. 31.)

중재부 \ 연 도	2018	2019	2020	합 계
서울중재부	2,580 (72.4)	2,591 (73.1)	2,850 (72.6)	8,021 (72.7)
부산중재부	71 (2.0)	75 (2.1)	60 (1.5)	206 (1.9)
대구중재부	118 (3.3)	113 (3.2)	117 (3.0)	348 (3.2)
광주중재부	113 (3.2)	85 (2.4)	100 (2.5)	298 (2.7)
대전중재부	78 (2.2)	102 (2.9)	56 (1.4)	236 (2.1)
경기중재부	275 (7.7)	281 (7.9)	413 (10.5)	969 (8.8)
강원중재부	19 (0.5)	79 (2.2)	45 (1.1)	143 (1.3)
충북중재부	75 (2.1)	46 (1.3)	47 (1.2)	168 (1.5)
전북중재부	94 (2.6)	62 (1.8)	103 (2.6)	259 (2.3)
경남중재부	89 (2.5)	93 (2.6)	94 (2.4)	276 (2.5)
제주중재부	50 (1.4)	17 (0.5)	39 (1.0)	106 (1.0)
계	3,562 (100)	3,544 (100)	3,924 (100)	11,030 (100)

* () 안의 숫자는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20년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가 3,622건(92.3%)으로 나타나 접수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방문접수 135건(3.4%),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 125건(3.2%), 우편접수 42건(1.1%) 순이었다.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건수는 2018년 2,513건(70.6%), 2019년 3,112건(87.8%), 2020년 3,622건(92.3%)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방식이 간소화 된 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거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에 제시된 상세한 안내문을 통해 민원인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조정신청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 7 |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계
2018		207 (5.8)	79 (2.2)	2,513 (70.6)	760 (21.3)	3 (0.1)	3,562 (100)
2019		131 (3.7)	55 (1.6)	3,112 (87.8)	246 (7.0)		3,544 (100)
2020		135 (3.4)	42 (1.1)	3,622 (92.3)	125 (3.2)		3,924 (1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0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1,245건(31.7%), 취하 1,214건(30.9%), 조정불성립결정 891건(22.7%), 기각 275건(7.0%), 직권조정결정 265건(6.7%), 각하 34건(0.9%)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정이 성립된 건 외에도 직권조정결정 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심리 전후로 신청이 취하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취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245건의 조정사건 중 1,029건(26.2%)은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통해 보도가 게재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이 약속 또는 이행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 1. 1. ~ 2020.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8	3,562	1,081	111	89(7)	645(8)	88	12	1,264	272	71.4%
	%	30.3	3.1	2.5	18.1	2.5	0.3	35.5	7.6	
2019	3,544	1,129	121	100(6)	734(26)	279	65	932	184	69.2%
	%	31.9	3.4	2.8	20.7	7.9	1.8	26.3	5.2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	31.7	4.2	2.5	22.7	7.0	0.9	26.2	4.7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text{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 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구제가 된 사건 등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0년 피해구제율은 67.8%로 2019년 피해구제율(69.2%)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대비 피해구제건수는 상승하였으나 전체 청구건수 또한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8	3,562	100	3,462	2,471	71.4%
2019	3,544	344	3,200	2,214	69.2%
2020	3,924	309	3,615	2,451	67.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1.8%, 반론보도청구 30.5%, 추후보도청구 30.7%, 손해배상청구 32.5%로, 2019년(정정보도청구 34.5%, 반론보도청구 33.4%, 추후보도청구 7.9%, 손해배상청구 30.7%)과 비교해 대체로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은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보도청구에서는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한 결과가 나왔다.

표 10 |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983 (100)	630 (31.8)	146 (7.4)	440 (22.2)	109 (5.5)	8 (0.4)	548 (27.6)	102 (5.1)
반론	695 (100)	212 (30.5)	30 (4.3)	115 (16.5)	109 (15.7)	1 (0.1)	201 (28.9)	27 (3.9)
추후	114 (100)	35 (30.7)	7 (6.1)	25 (21.9)	2 (1.8)	1 (0.9)	40 (35.1)	4 (3.5)
손배	1,132 (100)	368 (32.5)	82 (7.2)	311 (27.5)	55 (4.9)	24 (2.1)	240 (21.2)	52 (4.6)
계	3,924 (100)	1,245 (31.7)	265 (6.8)	891 (22.7)	275 (7.0)	34 (0.9)	1,029 (26.2)	185 (4.7)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정정보도, 반론보도

A언론사는 신청인 대학이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갑질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소용역원들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청소용역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갑질도 하지 않았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신청인 대학과 청소용역원과의 고용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 부분은 반론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정정보도, 손해배상

B언론사는 신청인이 대학원 재직 시 수당을 부정수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반환 조치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반론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 지자체장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축소하고 국가가 아닌 가족이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발언은 신청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으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추후보도

D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코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수사결과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D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E언론사는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중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E언론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 처리현황

2020년 손해배상청구 1,132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368건(32.5%), 직권조정결정 82건(7.2%), 조정불성립결정 311건(27.5%), 기각 55건(4.9%), 각하 24건(2.1%), 취하 292건(25.8%)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결정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8	1,075 (100.0)	329 (30.6)	42 (3.9)	23[3] (2.1)	256[4] (23.8)	31 (2.9)	4 (0.4)	306 (28.5)	84 (7.8)
2019	1,263 (100.0)	388 (30.7)	37 (2.9)	44[3] (3.5)	266[14] (21.1)	94 (7.4)	24 (1.9)	339 (26.8)	71 (5.6)
2020	1,132 (100.0)	368 (32.5)	48 (4.2)	34 (3.0)	311[6] (27.5)	55 (4.9)	24 (2.1)	240 (21.2)	52 (4.6)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132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38건(3.4%)이지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열람·차단 등 금전배상 외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는 662건(58.4%)이었다.

표 12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8. 1. 1. ~ 2020.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8	1,075	59	5.5%
2019	1,263	53	4.2%
2020	1,132	38	3.4%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1,584억 5천 만 원, 최저액은 5천 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2천 만 원, 최저액은 1만 원이었다.

한편, 2020년 조정액 평균은 4,009,394원으로 2019년 4,817,442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조정액 평균에서 합의간주된 조정사건의 최고 조정액(1억원)¹⁾을 제외한 평균 조정액인 약 255만 원과 비교하면 100만 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의 평균 조정액을 침해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명예훼손 사건의 평균 조정액은 5,473,182원, 초상권 침해 사건의 평균 조정액은 887,500원으로 나타나 두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8.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8		1,000	10,000,000,000	90,317,695	15,000,000
2019		100,000	10,000,000,000	149,966,481	20,000,000
2020		5,000	158,450,000,000	481,480,644	15,000,000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8.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8		250,000	9,000,000	1,960,417	1,000,000
2019		150,000	100,000,000 ²⁾	4,817,442	2,000,000
2020		10,000	20,000,000	4,009,394	1,000,000

표 15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0.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6	10,000	20,000,000	5,473,182	3,000,000	3,000,000
초상권 침해		9	300,000	2,000,000	887,500	1,00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사생활 침해		2	500,000	4,000,000	2,250,000	2,250,000	

1)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간주된 조정사건(2019서울조정1152)

2) 각주 1) 참조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0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132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051건(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35건(3.1%), 재산상 손해 26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051건의 2.5%인 26건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된 반면, 초상권 침해 사건은 전체 35건의 25.7%인 9건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권리침해 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표 16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침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051 (100.0)	354 (33.7)	72 (6.9)	287 (27.3)	50 (4.8)	22 (2.1)	221 (21.0)	45 (4.3)
초상권 침해	35 (100.0)	8 (22.9)	6 (17.1)	4 (11.4)	5 (14.3)		12 (34.3)	
음성권 침해	6 (100.0)		2 (33.3)					4 (66.7)
성명권 침해	8 (100.0)	2 (25.0)		3 (37.5)		2 (25.0)	1 (12.5)	
사생활 침해	6 (100.0)	2 (33.3)	2 (33.3)	1 (16.7)				1 (16.7)
재산상 손해	26 (100.0)	2 (7.7)		16 (61.5)			6 (23.1)	2 (7.7)
계	1,132 (100.0)	368 (32.5)	82 (7.2)	311 (27.5)	55 (4.9)	24 (2.1)	240 (21.2)	52 (4.6)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잡지(50.0%), 주간신문(47.5%), 일간신문(42.2%), 방송(34.0%)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된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에 따라 피해구제된 비율은 인터넷신문(30.0%), 뉴스통신(30.0%), 인터넷뉴스 서비스(27.2%) 등 온라인 중심 매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매체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이 기사수정 및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역시 매체 특성을 반영해 신청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신 문	일간 신문	384 (100.0)	162 (42.2)	30 (7.8)	95 (24.7)	11 (2.9)	1 (0.3)	73 (19.0)	12 (3.1)	
	주간 신문	122 (100.0)	58 (47.5)	17 (13.9)	35 (28.7)	1 (0.8)		8 (6.6)	3 (2.5)	
방 송		465 (100.0)	158 (34.0)	36 (7.7)	138 (29.7)	28 (6.0)	5 (1.1)	79 (17.0)	21 (4.5)	
잡 지		4 (100.0)	2 (50.0)	1 (25.0)	1 (25.0)					
뉴스통신		247 (100.0)	82 (33.2)	16 (6.5)	26 (10.5)	24 (9.7)	4 (1.6)	74 (30.0)	21 (8.5)	
인터넷신문		2,102 (100.0)	647 (30.8)	120 (5.7)	432 (20.6)	158 (7.5)	20 (1.0)	631 (30.0)	94 (4.5)	
인터넷 뉴스서비스		596 (100.0)	136 (22.8)	45 (7.6)	164 (27.5)	53 (8.9)	2 (0.3)	162 (27.2)	34 (5.7)	
기 타		4 (100.0)					2 (50.0)	2 (50.0)		
계		3,924 (100.0)	1,245 (31.7)	265 (6.8)	891 (22.7)	275 (7.0)	34 (0.9)	1,029 (26.2)	185 (4.7)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순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명예훼손으로 접수처리된 사건의 경우 전체 3,778건 중 1,224건(32.4%)이 조정성립되었고, 1,168건(30.9%)이 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이 중 997건(26.4%)은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구제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한 건이 171건(4.5%)이었다.

초상권 침해로 접수처리된 45건 중 11건(24.4%)은 조정성립, 16건(35.6%)은 취하되었으나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명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모두 높은 수준이다.

표 18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침해유형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778 (100.0)	1,224 (32.4)	255 (6.7)	834 (22.1)	265 (7.0)	32 (0.8)	997 (26.4)	171 (4.5)
초상권 침해	45 (100.0)	11 (24.4)	6 (13.3)	6 (13.3)	6 (13.3)		16 (35.6)	
음성권 침해	6 (100.0)		2 (33.3)					4 (66.7)
성명권 침해	12 (100.0)	2 (16.7)		6 (50.0)		2 (16.7)	2 (16.7)	
사생활 침해	7 (100.0)	2 (28.6)	2 (28.6)	1 (14.3)				2 (28.6)
재산상 손해	68 (100.0)	3 (4.4)		43 (63.2)	3 (4.4)		13 (19.1)	6 (8.8)
기 타	8 (100.0)	3 (37.5)		1 (12.5)	1 (12.5)		1 (12.5)	2 (25.0)
계	3,924 (100.0)	1,245 (31.7)	265 (6.8)	891 (22.7)	275 (7.0)	34 (0.9)	1,029 (26.2)	185 (4.7)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명예훼손

F언론사는 모 회사가 식약처로부터 특정 제품의 생산 중단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보상조치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 회사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식약처가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생산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 점, 허위보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F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례 | 초상권

G언론사는 한 지역 주민집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언 중인 주민의 모습을 게재하였다. 이에 해당 주민은 동의 없이 촬영된 초상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G언론사의 부주의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청구한 2,187건 중 608건(27.8%)이 보도 게재,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고, 597건(27.3%)이 조정

성립, 507건(23.2%)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조정성립률은 국가기관(56.5%), 지자체(52.6%), 공공단체(49.3%), 일반단체(41.9%), 기업체(3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언론사(51.0%), 교육기관(4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일반단체 및 종교단체는 모두 2019년보다 낮은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을 보였으며,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종교단체의 경우 35.7%로 2019년 46.7%에 비해 11.0%p 낮아졌다.

표 19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개 인	2,187 (100.0)	597 (27.3)	137 (6.3)	507 (23.2)	215 (9.8)	30 (1.4)	608 (27.8)	93 (4.3)
국가기관	108 (100.0)	61 (56.5)	14 (13.0)	8 (7.4)	1 (0.9)		17 (15.7)	7 (6.5)
지자체	152 (100.0)	80 (52.6)	22 (14.5)	13 (8.6)		1 (0.7)	22 (14.5)	14 (9.2)
공공단체	140 (100.0)	69 (49.3)	15 (10.7)	9 (6.4)			40 (28.6)	7 (5.0)
일반단체	375 (100.0)	157 (41.9)	28 (7.5)	92 (24.5)	30 (8.0)	3 (0.8)	41 (10.9)	24 (6.4)
종교단체	98 (100.0)	26 (26.5)		35 (35.7)	3 (3.1)		28 (28.6)	6 (6.1)
기업체	688 (100.0)	229 (33.3)	42 (6.1)	149 (21.7)	23 (3.3)		224 (32.6)	21 (3.1)
언론사	51 (100.0)	6 (11.8)	1 (2.0)	26 (51.0)	2 (3.9)		8 (15.7)	8 (15.7)
교육기관	125 (100.0)	20 (16.0)	6 (4.8)	52 (41.6)	1 (0.8)		41 (32.8)	5 (4.0)
계	3,924 (100.0)	1,245 (31.7)	265 (6.8)	891 (22.7)	275 (7.0)	34 (0.9)	1,029 (26.2)	185 (4.7)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72.6%(2,850건)를 처리한 서울중재부에서는 820건(28.8%)이 조정성립으로 사건종결되었고, 773건(27.1%)은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634건(22.2%)에 대해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고, 268건(9.4%)은 기각, 33건(1.2%)은 각하로 2019년(기각

10.0%, 각하 2.0%)의 경우보다 각각 0.6%p, 0.8%p 소폭 하락했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7.4%, 총 1,074건)의 경우 425건(39.6%)이 조정 성립, 256건(23.8%)이 피해구제를 이유로 한 취하, 257건(23.9%)은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직권조정결정은 서울중재부 189건(서울중재부 사건의 6.6%), 지역중재부 76건(지역중재부 사건의 7.0%)으로 지역중재부가 서울중재부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역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 비율은 작년(3.9%)보다 약 1.8배 증가하였다.

표 20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마구제
서울	2,850 (100.0)	820 (28.8)	189 (6.6)	634 (22.2)	268 (9.4)	33 (1.2)	773 (27.1)	133 (4.7)
부산	60 (100.0)	15 (25.0)	2 (3.3)	22 (36.7)			19 (31.7)	2 (3.3)
대구	117 (100.0)	61 (52.1)	1 (0.9)	13 (11.1)			31 (26.5)	11 (9.4)
광주	100 (100.0)	25 (25.0)	24 (24.0)	28 (28.0)			20 (20.0)	3 (3.0)
대전	56 (100.0)	6 (10.7)		9 (16.1)			39 (69.6)	2 (3.6)
경기	413 (100.0)	174 (42.1)	39 (9.4)	128 (31.0)	2 (0.5)	1 (0.2)	54 (13.1)	15 (3.6)
강원	45 (100.0)	23 (51.1)	2 (4.4)	8 (17.8)			10 (22.2)	2 (4.4)
충북	47 (100.0)	32 (68.1)		7 (14.9)			3 (6.4)	5 (10.6)
전북	103 (100.0)	16 (15.5)		5 (4.9)	4 (3.9)		68 (66.0)	10 (9.7)
경남	94 (100.0)	59 (62.8)	8 (8.5)	15 (16.0)	1 (1.1)		9 (9.6)	2 (2.1)
제주	39 (100.0)	14 (35.9)		22 (56.4)			3 (7.7)	
계	3,924 (100.0)	1,245 (31.7)	265 (6.8)	891 (22.7)	275 (7.0)	34 (0.9)	1,029 (26.2)	185 (4.7)

* () 안의 숫자는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혹은 디지털플랫폼을 등장시키고,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으로 인해 언론사 등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디지털 뉴스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인터넷신문을 언론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2009년에는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등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급부상하면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매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피해구제 대상과 영역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97.3%, 피신청인의 8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에 정정보도, 기사수정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합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의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조정실무 담당자 간 인터넷 기반 매체를 중심으로 한 조정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실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의 통일성과 시의성을 높이는 등 언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언론사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보도 활동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매체를 통한 뉴스 형태의 정보 유통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행법의 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언론조정제도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즉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같은 새로운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다종다양한 인터넷 기반 미디어들이 출현하는 디지털 시대에 언론피해구제의 공백과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 례 |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1

H언론사는 대형 신발 업체인 신청인이 작은 기업체 대표에게 상표권 거래를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10억 원의 벌금까지 물게 한 반면 신청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H언론사는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H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된 반론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링크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

I언론사는 연휴기간 동안 여행지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방역지침 준수 문제와 현지인들의 불안감을 보도하면서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I언론사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조정대상기사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들 사진이 포함된 조정대상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I언론사에게 게시물을 특정하여 통보하고 I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등에게 신청인들의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3

J언론사는 지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 주민대표회의 및 위원장은 고소사건은 3건에 불과하며, J언론사가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J언론사는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창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9.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 운영

위원회 「언론조정중재규칙」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포털사이트 대상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중재부를 운영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 및 확산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서울제5중재부)를 지정·운영하였다.

위원회는 가장 많은 매체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전담중재부를 설치, 서울 소재 언론사가 보도한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전담중재부에 배당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잘못된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코로나19 방역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에 설치한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는 총 90건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 89.0%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건(21.1%)이 조정성립, 51건(56.7%)이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다.

한편 각 지역 소재 언론사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재부가 신속히 처리하였다. 전국 10개 지역중재부는 총 29건의 코로나19 관련 조정사건을 처리, 82.8%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표 21 | 코로나19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2020. 3. 5. ~ 2020.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취하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구제	미구제		
							구제	미구제		
전담중재부	90 (100)	19 (21.1)	3 (3.3)	8 (8.9)	8 (8.9)		51 (56.7)	1 (1.1)	89.0%	
지역중재부	29 (100.0)	7 (24.1)	1 (3.4)	3 (10.3)			16 (55.2)	2 (6.9)	82.8%	
계	119 (100.0)	26 (21.8)	4 (3.4)	11 (9.2)	8 (6.7)		67 (56.3)	3 (2.5)	87.4%	

* () 안의 숫자는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태 종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오보나 왜곡보도인 점이 밝혀지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국민들의 오해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사 례 | 코로나19 전담중재부 사건 1

K언론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른 어머니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K언론사가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점, 여러 매체에 해당 사진을 제공한 점, 유치원복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사정 등을 감안해 K언론사가 어머니(신청인 겸 자녀 2명의 법정대리인)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직권으로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례 | 코로나19 전담중재부 사건 2

L언론사는 한 정부 부처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이 모두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당 부처의 발표는 '가짜 뉴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 부처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L언론사가 '해당 부처는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받았음을 통보받았고, 가짜뉴스라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평가

2020년 위원회는 4천 건에 육박하는 총 3,92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최근 5년간 다수매체 대상 대량신청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기준 조정사건은 2016년 3,170건, 2017년 3,230건, 2018년 3,562건, 2019년 3,544건, 2020년 3,924건으로 매년 3천 건 이상 접수·처리되고 있다. 피해구제율 역시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0%에 근접한 67.8%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수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등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청구권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상 언론보도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담은 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등 매체 특성에 부합하고 인터넷상 피해의 구제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위원회의 조정사건 접수·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에 대한 조정신청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원회 역시 인터넷 중심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열람이나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권리침해적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퍼 날라지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으로 인한 피해 역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권유하여 해당 권리침해적 기사들에 대해서도 열람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피해구제보도문(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작성 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새로운 방안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정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2020년 조정신청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18일) 보다 하루 증가한 19일로 늘어났으며, 여전히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조정신청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천 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중재위원이 증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재부는 2014년 이후 증설이 되지 않고 있어 신속하고 간편한 언론피해구제라는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 달성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수나 언론사 수가 상당함에도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타 지역으로 이동해 조정심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19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중재위원 정수를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되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정사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용만족도 향상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중재위원 증원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이다.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매체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 시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권고 대상기사가 인터넷으로 보도된 경우 위원회는 법익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향후 지속적인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20년 총 2,631개 매체를 모니터링하여 393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9년 모니터링하였던 2,658개의 매체 중 폐간 매체 등 102개 매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신규등록한 매체와 포털사 제휴·검색매체 중 법익 침해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75개의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에 포함시켰다.

한편 2020년 제1차부터 제12차까지 총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결정은 850건이었고, 이중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이나 삭제(이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를 한 경우는 523건으로 집계되었다. 총 12회차 동안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61.5%로 나타났다.

표 22 | 2020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0. 1. 1. ~ 2020. 12. 31.)

수용 여부	수용		불수용	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	320 (37.6%)	203 (23.9%)	327 (38.5%)	850 (100%)
	523 (61.5%)			

※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매체 대상 시정권고 결정 85건 제외

2. 침해 유형별 분석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차별금지 조항 관련 시정권고 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총 110건으로 지난 2019년의 9건에 비해 1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이 특정지역이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침해 유형은 2019년과 동일하게 ‘사생활 침해 등’으로 188건(20.1%)이었고, 그 뒤로 기사형 광고 157건(16.8%), 자살 관련 보도 112건(12.0%), 차별 금지 110건(11.8%), 여론조사 보도 102건(10.9%), 충격·혐오감 66건

(7.1%)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자살 관련 보도, 기사형 광고 및 기사 제목 관련 법익침해 사례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인자 개인정보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이동 청소년의 보호	정신 장애인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음란 포악 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18	계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2019	계	1,288 (100)	458 (35.6)	25 (1.9)	101 (7.8)		19 (1.5)	47 (3.6)	1 (0.1)		12 (0.9)	1 (0.1)	9 (0.7)	21 (1.6)	68 (5.3)	27 (2.1)	77 (6.0)	42 (3.3)	12 (0.9)	105 (8.2)	123 (9.5)	132 (10.2)	8 (0.6)
2020	계	935 (100)	188 (20.1)		28 (3.0)			24 (2.6)				17 (1.8)	110 (11.8)		2 (0.2)	43 (4.6)	112 (12.0)	30 (3.2)	37 (4.0)	66 (7.1)	102 (10.9)	157 (16.8)	19 (2.0)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침해 등

2020년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188건이었다. 고위공직자 또는 유명 기업인, 연예인 등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개한 보도,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사례가 있다 ([사례 1] 참조).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보도하면서 딸의 국적 및 거주지역, 현 소속 대학 및 이전에 재학하던 학교, 과 등의 이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는 공익적 가치가 있으나,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나. 차별 금지

위원회는 2020년 차별 금지 조항 관련 110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중 코로나19 보도 관련 건수는 100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100건 중 코로나 방역 관련 보도를 하면서 방역과 무관한 확진자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등의 보도가 78건으로 나타났다((사례 2) 참조). 그밖에도 위원회는 특정지역이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대구 코로나’, ‘연쇄전염마’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 례 2 | 차별 금지

시사 > 전체기사

[단독]이태원 []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클럽 세 곳 2000여명 방문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입력 : 2020-05-07 07:21 / 수정 : 2020-05-07 08:43

(중략)

이태원 [] 클럽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한 클럽 세 곳에 2000여 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우려된다.

6일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에 거주하는 20대 이 남성은 이 지역 []번체 확진자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보기술(IT) 업체에 다닌다.

이태원 [] 클럽 []은 이날 SNS에 “지역사회 확진자가 2일 00:20~03:00 []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확진자는 2일 방문후 6일 관계 당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자가 이태원을 방문한 동선에 []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연락받았다. 영업일 모두 매일 클럽 내부를 자체 방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휴 영업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재택근무 중이던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이하 생략)

-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소재 특정 클럽에 다녀갔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클럽이라는 문구를 쓴 사례.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은 방역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정을 권고함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다. 자살 보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112건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의 77건에 비해 3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상당수는 유명인이나 공직자의 자살에 관한 보도가 차지하고 있다.

보도 유형으로는 자살자의 신원뿐만 아니라 자살장소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한 사례([사례 3] 참조), 유명인의 자살에 관해 보도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례,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공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사 례 3 | 자살 보도



(중략)

앞서 지난 27일 [] 전자 직원 A [] 씨가 이날 오후 서울 [] 구 []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 전자 내 [] 본부 [] 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사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도 별다른 이상 조짐은 없었으며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12시34분께 17층 사무실로 활용되지 않은 빈 공간에서 신발을 벗어 놓은 채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 [] >는 A씨 투신한 다음날인 28일 오후 [] 빌딩에 가봤다.

사고현장을 둘러본 결과, 사고가 일어났다고는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됐다. A씨가 투신했다는 장소도 직접 살펴본 결과 물청소로 깨끗하게 원래대로 복원됐다.



28일 [] 빌딩을 방문했을 당시 시멘트 벽면에는 물청소 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인다. 사진= [] 기자

(이하 생략)

- 모 기업 직원이 자살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장소를 상세히 묘사한 사례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라. 충격·혐오감

2020년 충격·혐오감 관련 시정권고는 총 66건으로 2019년 105건에 비해 3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잔인하거나 비참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가 관련 보도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0년에는 교통사고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26건으로 나타나 충격·혐오감 관련 전체 시정권고의 39%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3세 아이가 깔려 크게 다치는 모습의 영상을 여과 없이 노출한 보도가 있다(〔사례 4〕 참조).

사 례 4 | 충격혐오감



※ 해당 영상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aKao TV '보배드림'

[저작권자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통사고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음

마. 여론조사 보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는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독자들이 해당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9년 123건에서 2020년 102건으로 소폭 줄었다.

2020년 여론조사 보도 관련 대표적 시정권고 사례는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전하면서 주요 질문내용을 제외한 필수 고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한 경우다(〔사례 5〕 참조).

투데이

[뉴스추적] 과연 수술실에 CCTV는 필요할까?

기사승인 2020. 07. 26. 16:03

최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측과,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술 중 의료사고로 숨진 6살 남아의 유족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 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수술실에 CCTV가 없어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6일 오후 2시45분 현재 62,0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실 안에서의 생일파티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처음 제기됐다. 그 이후 2016년에도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회 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며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수술진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수술 의료사고 건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하 생략)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거나 그 출처 등을 공개하지 않음

바.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는 2018년 136건, 2019년 132건에 이어 2020년에는 157건을 기록하였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광고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과장된 내용이나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실로 오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성 정보를 바이라인과 함께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 례 6 | 기사형 광고

성남 []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의사, 재활치료사, 환자 한 팀처럼 맞춤형 진료... 첨단장비 통한 비수술 척추 치료도 주목

[] 기자 [] | 2020-05-14 12:23:34



글자크기 + - 인쇄



▲ []이 정식 개원과 함께 전문,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무릎 전담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성남 [] 병원(병원장 [])이 5월 11일 정식 개원하고 성남을 비롯해 용인, 광주, 여주, 이천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관절, 척추 치료 여건 개선에 나선다.

[] 병원은 대지 면적 약 32만7870㎡에 58개 병상과 299대의 주차 시설 규모로 11일 진료를 시작했다.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와 연결되고 탄천, 송파 IC는 직선 거리로 각각 2.4km씩 떨어져 있으며 성남 버스터미널과도 불과 3.6km 거리에 있어 광주, 이천, 여주 등 주변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1만례 이상 무릎 치료 전문가들이 전담팀 체계로

□ 병원은 전문, 체계적인 무릎 치료를 위한 전담팀 시스템을 도입했다. 1만례 이상 무릎 치료 임상경험과 정형외과 최고 권위의 SCI 저널 AJSM, JBJS 등에 8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며 치료와 연구 양 분야에서 모두 석학으로 꼽히는 □ 원장이다.

의료진 한 명이 모든 무릎 질환을 담당하지 않고 퇴행성, 스포츠손상, 양성종양, 줄기세포치료 등 질환의 세분화를 통해 각 각의 전문 영역을 유지, 협진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오진과 재발 등의 합병증 발생률은 낮아지고 치료 성공률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수술 후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무릎 전담 재활치료팀도 운영한다. 일선 병원에서 시행되는 일대다수 치료가 아니다. □ 병원에서는 의사, 재활치료사, 환자가 하나의 팀이 돼 환자의 통증, 기능회복 정도에 따른 맞춤형으로 진행돼 세심한 수술 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첨단 장비 활용한 척추신경 치료

□ 척추신경 질환 역시 신경외과, 마취통증,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협진 체계를 통해 비수술 척추치료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ASIA spine 2016 Best Presentation Award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 원장이 함께한다.

□ 척추신경팀은 전신 척추스캔과 체내조직의 특성, 성분분석이 가능한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행 MRI를 비롯한 여러 첨단 영상의학 장비 도입으로 모호한 진단에 따른 수술 시행을 최소화한다.

비수술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단순한 신경차단 치료가 아니다. 실시간 영상의학 장비와 초소형 척추신경 내시경과 같은 학계 최선 지견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술만으로도 수술에 준하는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기자]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3. 매체 유형별 분석

연간 시정권고 결정건수 대비 인터넷신문 대상 결정의 비중이 4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2020년 매체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인터넷신문이 793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77건(8.2%), 뉴스통신 57건(6.1%), 방송 6건(0.6%) 순이었다.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9개, 뉴스통신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등 인터넷매체에 시정권고 결정이 집중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매체 중 인터넷매체가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 상대적으로 법익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사의 전파와 복제가 지면매체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넷신문의 경우 특정 심의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43건의 최다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특정 매체의 경우 ‘충격·혐오감’ 심의기준 위반이 14건, ‘폭력 묘사 등’ 심의기준 위반이 11건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매체의 심의기준 위반 건수의 58%를 자극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익침해가 차지하였다. 또한 모 매체의 경우에는 16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14건이 ‘기사 제목’ 심의기준 위반이었다. 이는 일부 인터넷신문에서 선정적인 내용이나 제목으로 기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독자를 유인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8. 1. 1. ~ 2020.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8	1,275 (100)	38 (3.0)	52 (4.0)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2019	1,288 (100)	34 (2.6)	60 (4.7)	5 (0.4)	2 (0.2)	73 (5.7)	1,101 (85.5)	13 (1.0)
2020	935 (100)	12 (1.3)	65 (6.9)	2 (0.2)		57 (6.1)	793 (84.8)	6 (0.6)

※ () 안의 숫자는 %

4. 시정권고 결정문 양식 개선

언론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다는 점, 언론매체 유형(신문, 잡지,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가운데 현재 인터넷매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2018~2020년 결정된 시정권고의 90% 이상이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내려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를 운용하는 언론사에 인터넷상 기사에 대한 기사수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시정권고 결정문상의 ‘권고사항’ 문구 양식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사는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 향후 언론사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및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평가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중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61.5%로 나타났다. 시정권고제도가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임에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은, 법익침해 재발을 막고 이미 침해된 법익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고 지속적인 확인 및 독려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위원회의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및 점검하기 위해 매달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을 조사하고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시정권고제도 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

침해유형 측면에서 보면 2020년에는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과 혐오가 가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져 차별이나 혐오감 관련 시정권고 결정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차별·혐오 관련 법익침해 보도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체 유형 측면으로는 인터넷신문 대상 시정권고 결정이 80%를 넘고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을 합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전체 시정권고 결정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 기반 매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절한 제도 운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법익침해 유형에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개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시정권고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 운영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이고,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2020년 재·보궐선거는 1회 실시되었으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연 1회,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될 예정이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및 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한편, 선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의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해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실무부서 직원과 선거기사심의원이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가운데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해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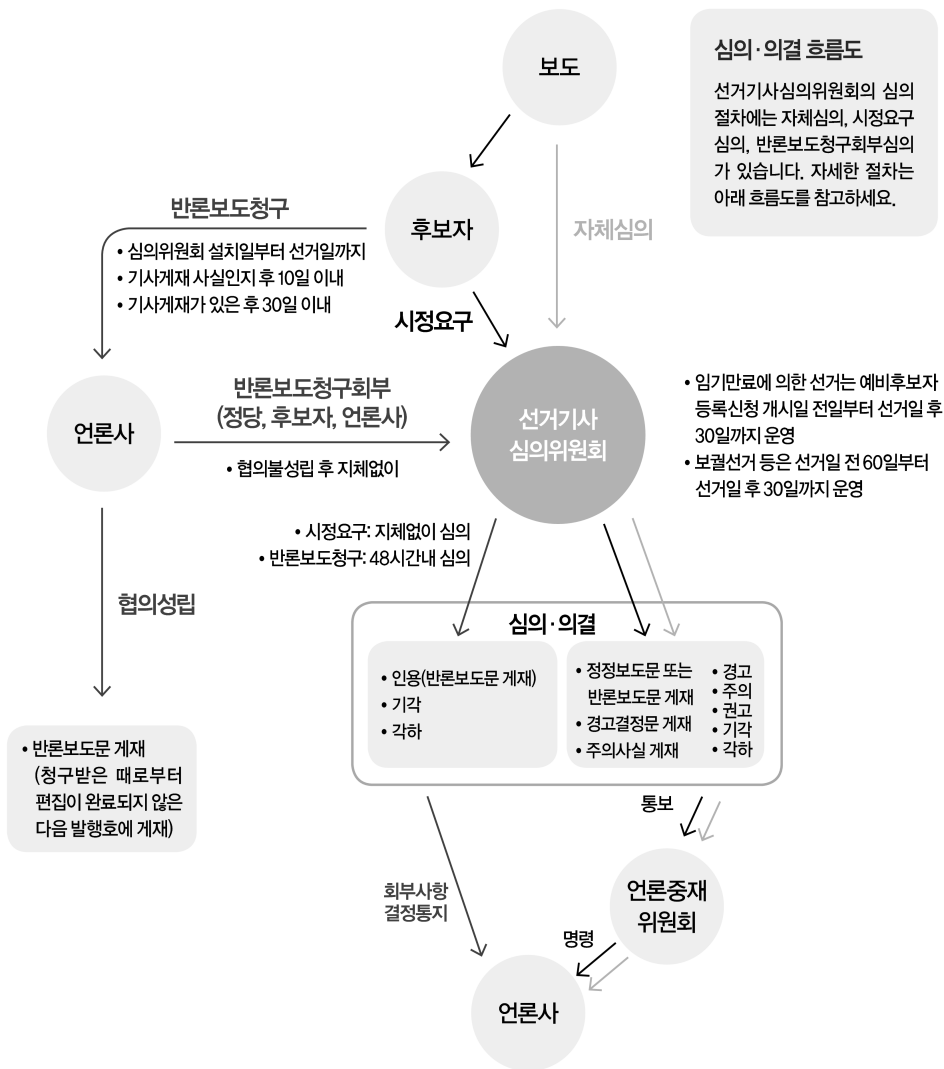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고 시정요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선심위의 제재조치 결정은 위원회에 통보되며,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정요구의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적법할 경우에는 선심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 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청구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심의 · 의결 흐름도]



불이행시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재심청구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재심의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2019년 12월 16일 출범하였고,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2020년 2월 15일에 출범하여 5월 15일까지 각각 설치·운영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위원장	김영철	강원도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민영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황성현	변호사	자유한국당
	서명준	국립한국전문대학대 외래교수	바른미래당
	정낙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허 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구 : 총 57개]

구·시·군의장 (8)	부산 중구, 경기 안성시, 강원 고성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상주시
시의원 (17)	부산 남구제2, 대구 동구제3, 대구 동구제4, 대전 서구제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제9, 경기 성남시 제7(분당구), 충북 청주시제10,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제1, 충남 천안시제5, 경북 포항시제6, 경북 안동시제2, 경북 구미시제6, 경남 진주시제3,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여래동,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시·군의회의원 (32)	서울 동대문구아, 서울 강북구나, 서울 도봉구라, 서울 서대문구마, 부산 사하구가, 대구 동구라, 대구 동구마, 대구 동구바, 대구 북구바, 대구 북구아, 대전 서구나, 대전 서구바, 대전 유성구다, 울산 남구바, 울산 북구가, 경기 성남시라(수정구), 경기 평택시나, 강원 춘천시사, 강원 홍천군가, 충남 아산시사, 충남 금산군나, 전북 전주시마, 전북 군산시바, 전남 여수시나, 전남 순천시사, 전남 함평군가, 경북 포항시미(북구), 경북 안동시바, 경북 구미시바, 경북 울진군다, 경남 의령군나, 경남 고성군다



나. 심의·의결현황

선심위는 운영기간 150일 동안 총 446개 매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심의 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모니터링 하였고, 11차례의 회의를 열어 12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후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시정요구심의는 총 12건이었다.

선심위는 총 123건의 안건 중 117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결정내용별로 살펴보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5건으로 총 8건의 보도문이 게재되었고, 경고 48건, 주의 43건, 권고 16건 순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심의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문을 결정한 안건은 6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제한 조항 위반과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이 각 10건,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후보자 기고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5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3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75건으로 총 제재 대상 매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역주간지 23건, 중앙일간지 7건, 종합주간지 5건, 뉴스통신 2건 순이었다.

표 25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제재결정 현황 (2019. 12. 16. ~ 2020. 5. 15.)

간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 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간지	중앙	7	3		3	1					3	4	
	지역	75	57	1	6	2	9	1	3	36	27	6	2
주간지	종합	5	2	2			1			1	3	1	
	지역	23	21			2		1	1	10	8	3	
월간지		5	4		1					1	2	2	
뉴스통신		2	2					1	1				
계		117 (100.0)	89 (76.1)	3 (2.6)	10 (8.5)	5 (4.3)	10 (8.5)	3 (2.6)	5 (4.3)	48 (41.0)	43 (36.8)	16 (13.7)	2 (1.7)

* ()안의 숫자는 %

사 례 1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자 1면 「거물급 신인등장, 나주·화순 선거판 '요동'」 및 3면 「농민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2019년 12월 30일자 3면 「농협 바깥, 인간 김병원」, 2020년 1월 6일자 1면 「요동치는 화순, 선거전 본격 '점화」, 2020년 1월 13일자 1면 「“김병원, 재계 9위 농협 이끈 성공적 리더십 기대감 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화순군민신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의 이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 심의대상기사 : 화순군민신문 2019년 12월 18일자 1면 「거물급 신인등장 나주·화순 선거판 '요동'」 및 3면 「농민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2019년 12월 30일자 3면 「농협 바깥, 인간 김병원」, 2020년 1월 6일자 1면 「요동치는 화순, 선거전 본격 '점화」, 2020년 1월 13일자 1면 「“김병원 재계 9위 농협 이끈 성공적 리더십 기대감 커”」
- ▶ 이유 :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력과 성과를 부각하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음

사 례 2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조치 사례)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12일 포토에세이 출판기념회 개최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중원구 지역위원장)가 성남종합운동장 내 성남종합스포츠허브 1층에서 오는 12일 오후 3시에 포토에세이 '사람들 사이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조신 예비후보자의 첫 번째 포토에세이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 위원장으로 중원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며 활동한 다양한 경험들을 사진으로 담은 책이다.

조신 예비후보자는 "인생의 8 할은 사람 속에서 배웠다. 그 삶의 단면을 담으려 노력했다.

넉넉하진 않지만 인심 좋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 분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꼭 필요한 힘찬 목소리가 되어 중원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람들 사이에서'를 통해 중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중원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조운제 전 주미대사 등이 축하영상을 통해 함께할 예정이다.

조신 예비후보자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약력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장(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단장(전)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 홍보관리관(전)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부단장(전)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전) ▶한국일보 기자(전)
성남 유행수기자

- ▶ 심의대상기사 : 경인매일 2020년 1월 7일자 4면 「12일 포토에세이 출판기념회 개최」
- ▶ 이유 :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저술 내용, 주요 약력 등과 함께 출판기념회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고 조치를 받음



신년특집

임선정 원장이 보는 2020 경자년 국운

대한민국은 기해년 망신수 보내고 칼자루 잡는 수!



저서 2세기 예언서 진자풍술 <신의망>, <천의망>, <약속의망>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산 가족상봉, 2002월드컵 82장에서 4강 진출, 16대 개띠 대통령 노무현 당선, 17대 대권은 소드메인 바다 사람 이영학 대통령 당선, 20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성공 등을 예언해 주위를 놀라게 했던 양백산국선원 임선정 원장에게 2020 경자년 새해의 세운(歲運)과 국운을 들어봤다.

경자년! 정도 많고 해도 많은 해로 같은 화려하고 속은 비어 고독하고 허망하다.

세운이 가을 추산에 나온 백서의 형국으로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감각이 민감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타고 났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게 꾸며도 마음은 늘 고독한 성품에 젖어 있는 격이다. 경자(庚子)란 가을 만국(萬國)이 익을 틈에 나타난 백서(白鼠)의 형상으로 물욕도 강하고 명성도 있는 수니 명예를 얻으면 재물도 따르기 마련이다. 2대 총선에 많은 인재들의 명성이 있는 수다. 오행상 경자(庚子)는 금생수(金生水)로 상생하는 관계이니 중단하지 말고 초지일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성운으로 성공하나 시류에 영합하거나 시세에 편승하며 이것저것 탐험하면 실패하는 수다.

오행(五行)상 천간(天干)의 상생(相生)을 받아 위로부터 덕을 보지만 인운을 당하는 수가 없고 아랫사람의 배신도 많이 따르는 해이다. 본래 서(鼠)는 임금 측근에서 해독을 끼치는 간신에 비유하니 국정의 실패가 보이는 듯하다.

경금(庚金)은 만물을 징벌하는 살벌한 기운을 갖고 있어 독신 독단의 기운이 많이 움직인다. 세운의 운수도 파멸운, 동서각비 자상이니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니 불길한 운수다.

동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지니 운수가 미약하다. 파국, 패기망신 곤궁 결핍병 약 중도에 파괴되는 일이 많다. 처음에는 우후죽순이지만 다 된 일이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파멸을 맞이하는 수로 세계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니 세상은 쓸 새 없는 흉란, 파산, 소요, 흉년, 병란(전쟁, 질병) 등 혼란과 혼돈의 해로 허망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운명이 몰려가라"하는 굳은 의지와 정신력이 있

어서 성공하는 해이다. 물질보다 영혼이 빈곤하니 신앙이 필요한 수다. 경자년! 광명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에 물을 채우는 만월보살의 해로 물을 채워 놓으면 먹어 치우는 악마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 세상에 내려와 쥐의 성좌(星座)로 관계를 원만히 하여 세상을 밝게 하는 천귀성(天貴性)을 가진 별의 해이다.

음자가 양자가 되는 수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
행상 수(水)로 지혜와도 통하고 동진 발양(冬天發陽)격으로 얼어붙은 겨울 하늘에 떠오르는 햇빛의 형상으로 어두운 음기가 물러가고 밝은 양기가 발생하여 기운을 얻는 상이다. 한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극한 고생을 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음자가 양자 되는 격이다.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로 편협과 독신이 실패에 이르는 해이다.

장성살이라 하여 용맹성이 왕성한 장수가 칼을 찬 격으로 무력의 강한 힘을 내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국운은 혁명수(革命수) 자미(紫微) 성공운!

오행상 중앙 토(土)에 해당하는 수다. 매사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중심적 중추적 작용을 하는 중용을 갖춘 군자에 비유하기도 하는 수로 중심적 위치에서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대혁명(大革命)의 해다. 2대 총선 이후 사회적인 신망과 명성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 성공하는 수다. 정신적으로도 원만하니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간다.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 같은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거나 앓을까 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면 마침내 뜻이 행해지는 행운이 있다.

2019 기해년 대한민국은 망신수를 보내고 경자년에 칼자루를 잡는 운으로 총선 이후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해다.

남사고 비결을 참고하면 庚子 후궁년 중묘(宗廟)가 3번 움직이고 어가(御駕)가 한 차례 옮길 것이라고 했다. 이때가 되면 몸을 보호할 땅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덕을 쌓고 어진 행을 베풀어 온 집이 아니면 남아 있지 못한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출발! 은혜가 원수 되고 성의가 오해 되는 수!

자난해 수가 홀로 쓰개져 분리되는 수로 불화가 원인이 된다고 했다. 국정의 분리 이별이 많고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등 회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운이 약하고 단결이 안 되어 일에도 성취가 어렵다. 어려서음만 남우하던 2019 기해년이 가고 2020 경자년의 새로운 출발과 사자의 해다.

그러나 즐거움 뒷전에 드러난 손실이 있다 하니 은혜가 원수 되고 성의가 오해 되는 수다. 하늘의 운행은 건전하여 하루도 쉬는 일이 없다. 군자는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는다.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반성하여 삼가고 조심하면 위태함이 있어도 허물은 없다고 했다. 대인 관계의 인맥이 넓어 같은 화려해도 북받침처럼 생각도 없는 장애물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니 조심해야 하고 타고난 선견지명과 통찰력으로 미연의 방지가 필요한 운수다.

과상 19대 정부운은 주저 없이 결단하고 이행했다. 바른 일일자리도 위협이 있다. 강력한 자가 군주의 지위

에 있으리 그 지위가 정당하다. 그러나 나강한 차는 위함이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국정은 석양에 비긴 해가 오래갈 수 있겠나!

석양의 비긴 해가 오래갈 수 있겠나! 질장구라도 치고 노래할 흥겨움도 없다. 너무나 늙었음이 서럽다. 흥하고도 한다.

20대 국회가 만사공저자이다. 잔파에는 능하나 실현성이 부족한 허무맹랑한 생각을 질하여 관여와 재량이 계속되니 산 넘어 산이다. 안정될 수 없는 수다.

서(鼠)를 임금 측근에서 해독을 끼치는 간신에 비유했듯이 경자년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특히 여당은 대통령 측근에서 국기에 해 끼치는 총신이 아닌가 자성해야 한다.

경제는 노서입고(老鼠入庫)자살!

경제는 늙은 쥐가 곡간에 들어간 상으로 의상이 낙낙한 격이니 경제는 발전하는 수다. 한국 경제가 하늘 법칙을 맡아 다스

- ▶ 심의대상기사 : 일요서울 2019년 12월 30일자(제1339호) 62~63면 「대한민국은 기해년 망신수 보내고 칼자루 잡는 수!」
- ▶ 이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정당의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권고 결정을 받음

사 례 4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주의 조치 사례)

한국당·새보수당 지지율 더하면 민주당보다 높아

<32.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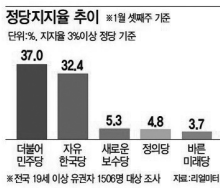
<37%>

리얼미터 여론조사

민주·한국 격차 4.2%p로 좁혀져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50%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했다. 새로운보수당은 리얼미터 첫 조사에서 5.3%를 차지해 정당지지도 3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



표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7.0%로 지난주와 비교해 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1% 상승한 32.4%로 나타났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지난주 9.8%포인트(민주당 41.1% 한국당 31.3%)보다 크게 줄었다.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새로운 보수당(새보수당)의 정당지지도는 5.3%로 나타났다. 민주·한국당에 이어 3위다. 또 같은 보수성향인 한국당과 지지도를 더하면 37.7%로 근소하게 민주당(37.0%)을 앞선다. 반면 새보수당 의원이 탈당한 바른미래당은 3.7%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외에 정의당 4.8%, 평화당 2.2%, 민중당 1.5%, 우

리평화당 1.5%, 대안신당 1.1%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내린 45.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1.2%로 전주와 비교해 4.7%포인트나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11월 3주차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13-15일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995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 50.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용석기자 chojun@

- ▶ 심의대상기사 : 이데일리리 2020년 1월 17일자 6면 「한국당·새보수당 지지율 더하면 민주당보다 높아」
- ▶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다른 두 개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수치보다 낮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결정을 받음

2.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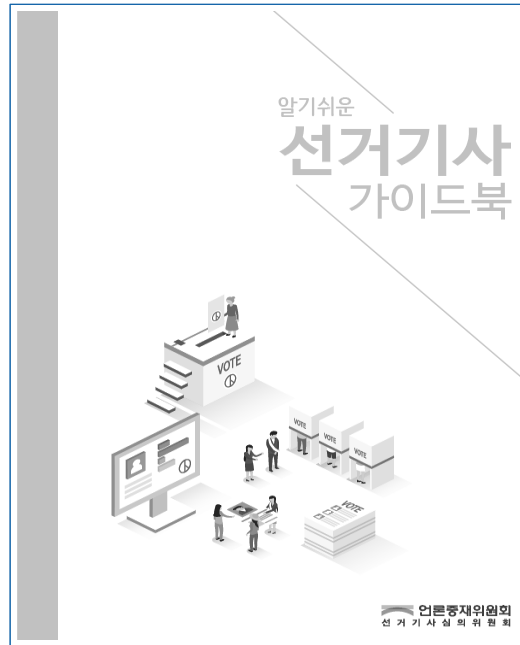
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후보자, 지자체, 언론사 등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전파 및 확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신규 제작하여 개정된 심의기준을 반영하고 최근 심의사례를 추가하여 후보자, 언론사 등 선거 관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현황]

구분	일자	대상
언론사	2020. 1. 2.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
	2020. 12. 4.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사 기자

[언론사 배포용 선거기사 가이드북]



3. 선거기사심의제도 연구 강화

선심위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동시에 선거기사심의 관련 판결 동향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심의기준을 정비해왔다.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 게재 금지 조항과 관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심위 역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거 종료 후 심의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선심위는 일반 심의기준과 세부 심의기준을 재분류 하였고, 세부 심의기준에 일반 선거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사유형에 따라 세부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전면개정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법규, 판례, 선관위 유권해석 사례 및 선거 기사심의 실무절차 등을 총망라한 「선거기사 실무제요」를 발간하여,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일관된 안건 검토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실무자를 위한 선거기사 실무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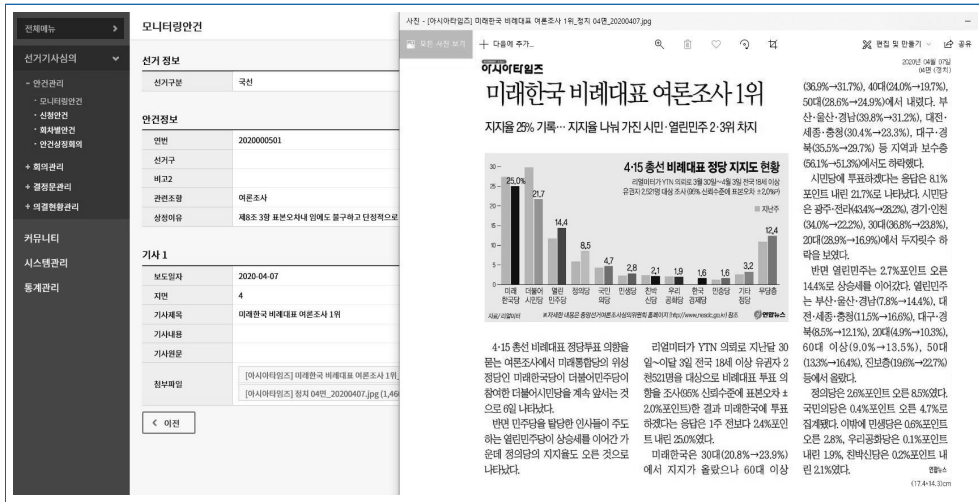


4. 선거기사심의시스템 도입 · 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새롭게 구축·도입한 선거 기사심의시스템을 활용한 첫 사례이다. 안건 상정에서 회의 진행, 결정문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였고, 특히 시스템을 통한 안건회의 진행으로 안건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시스템 접근성 향상, 용이한 자료 관리 및 데이터 검색, 의결현황 통계 관리 등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기능 개발과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 관련 업무의 능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선거기사심의시스템]



제3절 평가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보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재·보궐선거 선심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안전을 상정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출판기념회 및 선거홍보포스터 등 후보자의 홍보 이미지를 기사에 그대로 게재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의 공정성·형평성 위반 안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심의규정 개정에도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선심위는 면밀한 심의를 거쳐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합당한 제재 조치를 내림으로써 불공정 선거보도로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왔다.

선심위는 안전 심의·의결 외에도 관련 법제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재정비하여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안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안내문을 송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알기 쉬운 선거기사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자율적인 공정 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2020년 선심위 운영과 함께, 심의업무 처리에 첫 도입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은 이제 막 발을 댄 단계이다. 지속적인 기능 개발과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사용 편의를 향상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심의절차 마련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이은 실시로 사실상 선심위가 연중 운영된다. 심의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일관된 심의기준 적용, 효율적인 선심위 운영을 위해서는 선심위 상설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위원회는 선심위 상설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위원회는 철저한 대비로 안정적인 선심위 운영을 영위해나갈 예정이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 제 1 장

언론피해 상담

제1절 개요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을 위해 종합적인 피해구제 상담을 제공하였다.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더불어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안내했으며,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심리 종결 이후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절차에 대한 폭 넓은 상담을 제공하였다.

특히, 신청서 작성 방식을 더욱 간소화하여 신청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였다. 기사를 공유한 동일계열사 매체들에 대한 신청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 예문도 유형별로 재정비하여 민원인이 필요한 양식을 편리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위원회 상담이용자의 만족도는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 3,336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상담건수는 3년 연속 3천 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제2절

주요 실적

1. 상담경로

2020년 전체 상담건수는 3,336건으로 전년도보다 44건 증가하였다. 상담경로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 2,800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문고 237건(7.1%), 방문 130건(3.9%), 이메일 89건(2.7%), 인터넷 게시판 75건(2.2%)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담신청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방문 상담건수는 상당수 감소하였다.

표 26 | 상담경로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18	3,396 (100)	2,672 (78.7)	209 (6.2)	146 (4.3)	94 (2.8)	31 (0.9)	233 (6.9)	11 (0.3)
2019	3,292 (100)	2,777 (84.4)	200 (6.1)	52 (1.6)	109 (3.3)	34 (1.0)	114 (3.5)	6 (0.2)
2020	3,336 (100)	2,800 (83.9)	130 (3.9)	-	75 (2.2)	89 (2.7)	237 (7.1)	5 (0.1)

※ () 안의 숫자는 %

2. 상담 처리결과

2020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3,087건(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기관 안내 411건(10.9%),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 148건(3.9%) 등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타 기관 안내로 처리된 상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전파에 따라 발생한 확진자 동선 노출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민원인의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등을 적극 안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7 | 상담 처리결과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처리결과					합계
		조정절차 안내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	재상담 예정	타 기관 안내	기타	
2018	3,396	3,244 (69.4)	215 (4.6)	661 (14.1)	463 (9.9)	94 (2.0)	4,677 (100)
2019	3,292	3,108 (74.0)	336 (8.0)	482 (11.5)	218 (5.2)	55 (1.3)	4,199 (100)
2020	3,336	3,087 (82.1)	148 (3.9)	-	411 (10.9)	114 (3.0)	3,760 (100)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20년 위원회에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한 피해 유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명예 훼손에 관한 상담으로서 2,743건(82.2%)이었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는 140건(4.2%)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관련 상담이 66건(2.0%)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사생활 침해는 42건(1.3%)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9	3,292 (100)	2,859 (86.8)	182 (5.5)	55 (1.7)	38 (1.2)	158 (4.8)
2020	3,336 (100)	2,743 (82.2)	140 (4.2)	42 (1.3)	66 (2.0)	345 (10.3)

※ () 안의 숫자는 %

4. 상담매체 유형

2020년 상담 대상이 된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1,505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608건(14.8%), 일간신문 406건(9.9%), 뉴스통신 285건(7.0%), 인터넷뉴스

서비스 272건(6.6%), 주간신문 149건(3.6%) 등의 순이었다.

2020년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여전히 전체 상담매체 중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중에서는 뉴스통신에 대한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미디어 중심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위원회로 접수되는 상담대상 매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상담건수가 수년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길 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조정신청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만큼,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잘못된 보도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된다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표 29 | 상담매체 유형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합계
2018	3,396	397 (9.0)	167 (3.8)	568 (12.9)	21 (0.5)	224 (5.1)	1,846 (42.0)	4 (0.1)	359 (8.2)	58 (1.3)	747 (17.0)	4,391 (100)
2019	3,292	419 (9.6)	130 (3.0)	679 (15.5)	11 (0.3)	227 (5.2)	1,918 (43.9)	-	321 (7.3)	48 (1.1)	618 (14.1)	4,371 (100)
2020	3,336	406 (9.9)	149 (3.6)	608 (14.8)	10 (0.2)	285 (7.0)	1,505 (36.7)	1 (0.0)	272 (6.6)	20 (0.5)	844 (20.6)	4,100 (100)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5. 상담신청인 유형

2020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2,165건(64.9%), 회사 438건(13.1%), 일반단체 255건(7.6%), 지자체 및 공공단체 250건(7.5%), 국가기관 140건(4.2%), 교육기관 48건(1.4%), 종교단체 4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상담 이용 비중이 다소 늘었다.

표 30 | 상담신청인 유형

(2018. 1. 1. ~ 2020. 12. 31.)

연도	상담 건수	구분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8	3,396 (100)	2,284 (67.3)	93 (2.7)	316 (9.3)	400 (11.8)	54 (1.6)	47 (1.4)	202 (5.9)
2019	3,292 (100)	2,147 (65.2)	84 (2.6)	328 (10.0)	421 (12.8)	55 (1.7)	37 (1.1)	220 (6.7)
2020	3,336 (100)	2,165 (64.9)	140 (4.2)	255 (7.6)	438 (13.1)	48 (1.4)	40 (1.2)	250 (7.5)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2020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대상 유형은 원기사 3,079건(84.9%), 매개기사 256건(7.1%), 유사미디어콘텐츠 56건(1.5%), 복제기사 40건(1.1%), 댓글 16건(0.4%) 등이었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유사미디어콘텐츠나 SNS 등으로 공유된 복제기사에 대한 피해상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상담 비중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원 기사의 매개기사나 복제기사에 대한 상담까지도 일괄 제공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31 | 상담대상 유형

(2018. 1. 1. ~ 2020.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 담 대 상						
		원기사	매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콘텐츠	기타	합계
2018	3,396	3,280 (77.3)	662 (15.6)	34 (0.8)	130 (3.1)	54 (1.3)	83 (2.0)	4,243 (100)
2019	3,292	3,165 (85.7)	372 (10.1)	12 (0.3)	28 (0.8)	41 (1.1)	76 (2.1)	3,694 (100)
2020	3,336	3,079 (84.9)	256 (7.1)	16 (0.4)	40 (1.1)	56 (1.5)	181 (5.0)	3,628 (100)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불일치

※ 용어설명

매개기사 : 포털이나 댓글 등에서 원 언론보도를 전제한 것

복제기사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를 전제한 것

유사미디어콘텐츠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한 것

7. 피해구제수단

2020년 상담문의가 가장 많았던 피해구제수단은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으로 2,678건(61.5%)이었다. 이어 손해배상 888건(20.4%),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 332건(7.6%), 추후보도 79건(1.8%), 고소고발 50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 및 반론보도에 대한 상담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이나 해명성 반론 등 보도문 게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명예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담신청인의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상담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상담신청인에게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 및 확산된 권리침해적 보도에 대한 열람이나 검색 차단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청구권에 더하여 열람차단청구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구제 수단을 도입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 | 피해구제수단 상담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피해구제수단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보도·배포· 금지 청구	기사열람· 검색 차단 등	강제 집행 절차	고소· 고발	기타	합계
2018	3,396	2,896 (52.5)	95 (1.7)	1,671 (30.3)	25 (0.5)	617 (11.2)	5 (0.1)	54 (1.0)	149 (2.7)	5,512 (100)
2019	3,292	2,700 (53.1)	77 (1.5)	1,605 (31.5)	14 (0.3)	494 (9.7)	2 (0.0)	48 (0.9)	148 (3.0)	5,088 (100)
2020	3,336	2,678 (61.5)	79 (1.8)	888 (20.4)	15 (0.3)	332 (7.6)	1 (0.0)	50 (1.1)	309 (7.1)	4,352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수단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수단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3,924건의 조정청구사건을 접수·처리했다. 2014년과 2015년 당시 세월호 관련 대량신청 사건수를 제외하면 위원회 설립 이래 최다 청구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신청서 작성 방식을 더욱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언론조정중재신청 접수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접수상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전체 상담대상 중 유사미디어콘텐츠, SNS 공유기사, 댓글 등 현행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매체에 대한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체에 대한 상담건수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 이긴 하지만, 매체 환경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매체 간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미디어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담 비중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인격권 침해 기사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차단을 구하는 상담신청 역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사 SNS로 공유된 기사의 경우, 언론사의 원 기사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심리 단계에서 일괄 논의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권리침해적 기사에 대해 조정실무적으로 당사자 간 동의를 전제로 해당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가능한 위원회를 통한 일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규정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관련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연구 및 법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제1절 개요

2020년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인 대면·집합 교육에서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실시, 지속적인 교육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소회의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새로운 강의환경을 구축, 물리적 수용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교육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20년 위원회가 개설한 언론중재아카데미는 <상시접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상시접수 교육>은 위원회 소속 교육 강사가 기업,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일반 단체 등으로부터 언론피해 대응 방안 및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절차에 관한 강의를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연수 프로그램>은 위원회 주최 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무원, 언론인, 예비 법조인, 예비 언론인, 기업 임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별로 나누어 맞춤형 분쟁해결 전략 및 언론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소개하는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각각의 교육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시접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92회,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상별 연수를 진행한 교육은 52회를 기록하여 총 14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언론인 대상 연수 과정으로는 〈언론인 전문 연수〉와 〈지역 언론인 워크숍〉이 개설되었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언론인의 올바른 보도윤리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2020년에는 비대면 연수 방식으로 총 5회 실시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상반기에는 언론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로, 하반기에는 지역 특성·현안을 고려한 지역 저널리즘 중심 프로그램으로 각 1회 실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연수인 〈1인 미디어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실시(1회)하였다.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연수〉와 〈예비법조인 연수〉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1회 실시에 그쳤던 〈변호사 연수〉는 하반기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한 후 추가로 3회 실시하여 총 4회 진행하였으며, 〈예비법조인 연수〉 역시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해 겨울방학(2월) 과정을 여름방학(8월)으로 연기하고 비대면·온라인 연수로 1회 실시하였다. 교육 횟수가 다소 줄어든 아쉬움도 있었으나 평소 방문교육이 어려웠던 지역에 소재한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1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잘못된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와 혐오·차별적 발언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 등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 밖에 뉴미디어 시대, 온택트(ontact) 상황 속에서 예비언론인이 갖춰야 할 자세와 법적 소양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종 대면·집합교육이 상당수 취소 및 중단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전환하여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총 32회 실시, 소재지 위치 등의 문제로 기존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 학생들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였다. 또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는 세대를 위한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 소개, 오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 예방법 안내 등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언론 관련 분야로의 진로 상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쳐 내실을 다졌다.

위원회는 〈맞춤형 위탁연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국방대학교와 국방정신전력원의 신청을 받아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인과 기업 및 기관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위기관리 및 언론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주제로 강의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개선하고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교재 개선 및 신규 제작>, <동영상 개발>, <온라인 강의실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활용했던 교육교재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구성을 대폭 개선하고 최신 언론 경향에 맞는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수록하였다. 또한, 언론분쟁 관련 이론과 더불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희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분쟁 해결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신규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을 위해 언론인용, 청소년용 교육동영상 강좌를 제작하였고,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고 수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3 | 2020년도 교육 실시현황

(2020. 1. 1. ~ 12. 31. / 단위 : 회)

구분	상시접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계
언론인	17	7	24
(예비)법조인	0	5	5
대학생	5	1	6
초·중·고 학생	1	32	33
공무원 등	67	2	69
기업 임직원	0	4	4
기타	2	1	3
계	92	52	144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20년 위원회는 총 92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강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67회, 언론인 17회, 초·중·고 및 대학생 6회, 기타 2회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으로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교육 횟수를 보인 아쉬움은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안을 마련하여 내실을 다지는 등 발 빠른 대처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표 34 |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예비) 법조인	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18		29 (621)	3 (235)	42 (2,006)	133 (7,730)	10 (351)	-	217 (10,943)
2019		37 (883)	2 (64)	30 (1,311)	117 (5,650)	5 (192)	1 (20)	192 (8,120)
2020		17 (424)	0 (0)	6 (214)	67 (3,028)	0 (0)	2 (35)	92 (3,701)

※ ()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언론인 대상 교육

가. 언론인 전문연수

2020년 위원회는 언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강 기회가 부족한 소규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 방송 매체 소속 저 연차 기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신규 교육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언론인 전문연수>는 언론분쟁 예방법,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절차 소개,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세 차례 개최한 비대면 <언론인 전문연수>에서는 반복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언론분쟁의 쟁점과 최신 조정사례, 인터넷신문 윤리, 자율심의 사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표 35 | <언론인 전문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인 전문연수	6. 19.	언론인(인터넷 매체)	39명
제2차 언론인 전문연수	9. 16.	언론인(인터넷 매체)	30명
제3차 언론인 전문연수	10. 23.	언론인(인터넷 매체)	17명
제4차 언론인 전문연수	11. 12.	언론인(인터넷 매체)	26명
제5차 언론인 전문연수	11. 24., 26. ~ 27.	언론인(신문/방송)	28명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경북 기자협회와 연계하여 대구·경북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역 언론인 워크숍>를 개최하여 인격권 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 보도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하반기 <지역 언론인 워크숍>에서는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법률 쟁점과 선거기사심의제도, 심의사례 등을 소개하여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지역 언론인의 공정한 선거보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6 |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6.	대구지역 언론인 (신문/방송)	20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2. 4.	부산지역 언론인 (신문/방송)	10명

[(지역 언론인 워크숍(비대면))]

다. 1인 미디어 연수

뉴스·정보 등의 생산 주체가 다변화된 디지털·모바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하여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신규로 개최하여, 언론보도 분쟁예방 교육 노하우를 활용한 1인 미디어 관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였다.

표 37 | <1인 미디어 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1인 미디어 연수	11. 4.	1인 크리에이터	10명

3. 법조인 대상 교육

가. 변호사 연수

위원회는 2017년부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4회의 <변호사 연수>를 실시했으며, 언론분쟁 관련 판례의 동향 및 법적 쟁점, 최근 언론조정사례의 경향 및 특징,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조정 절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한편 하반기에 개최한 세 차례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위원회의 <변호사 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시간 인정과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38 |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변호사 연수	6. 24.	수도권 변호사	21명
제2차 변호사 연수	11. 12.	전국 변호사	22명
제3차 변호사 연수	11. 18.	전국 변호사	18명
제4차 변호사 연수	11. 27.	전국 변호사	22명

나. 예비법조인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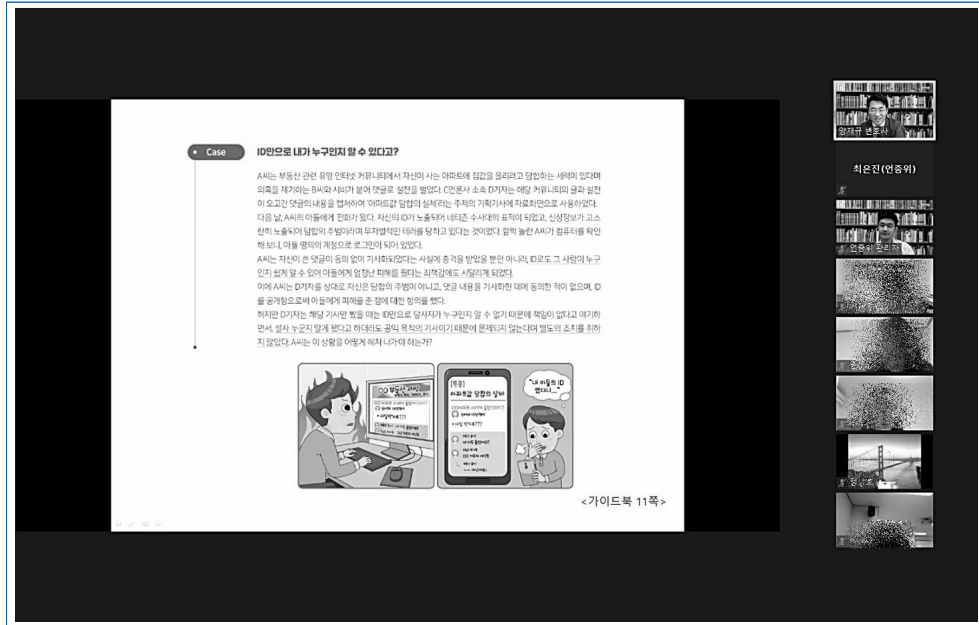
위원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겨울방학 실무수습은 연기하고 여름방학 실무수습 과정으로 통합하여 1회 실시하였다. <예비법조인 연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언론분쟁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언론법제와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언론소송의 쟁점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조정 심리 참관과 모의조정이 어려워진 대신 실제 사건을 각색한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해보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실무 위주의 짜임새 있는 구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39 |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예비법조인 연수	8. 10. ~ 8. 14.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77명

[<예비법조인 연수(비대면)>]



4. 대학생 대상 교육

위원회는 2020년 대학생 연수 심화과정인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대학이 상반기 개강을 늦추고, 하반기에는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는 등 대학생 대상 교육 진행 및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름방학 기간 동안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과정을 개최하여 교육수요 유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3일 과정으로 구성된 연수에서는 현직 언론인을 강사로 초빙, '선배 언론인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온택트(ontact) 시대 속 언론인의 하루를 공유하는 등 언론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잘못된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혐오와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폐해,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대면·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예년에 비해 지역 소재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강자의 수요와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균등하고 만족스러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참여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표 40 |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7. 22. ~ 7. 24.	전국 대학생	72명

5. 청소년 대상 교육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고민하면서 오보로 인해 침해당할 수 있는 인격권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 강화로 대면교육이 2월부터 상당수 취소 및 중단되어 2020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예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규모(총 32회, 교육 수강 인원 553명)로 진행되었다.

2020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은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역대 어느 세대보다 다양하고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허위·과장·편파 보도 등 일반적인 오보의 유형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기사형 광고·어뷰징 기사·가짜뉴스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보의 유형도 소개하여 뉴스를 접하고 이용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오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양상을 설명할 때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캐릭터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수강자 맞춤형 교육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언론 관련 직종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진로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20년 여름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 환경만 구축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는 대면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쉽지 않았던 지역 거주 학생들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비대면 교육 장면>]



다만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위원회 심리실 및 언론사 등을 견학하는 기존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한되면서 진로교육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위원회는 강사의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적극 수렴하면서 언론 관련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미진한 점을 보충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위원회는 국방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등 기관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위탁연수를 실시하였다. 기관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2회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언론 대응에 대한 이해, 언론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기관별 맞춤형 사례를 수집,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왔다.

표 41 | <맞춤형 위탁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맞춤형 위탁연수	10. 13. ~ 10. 14.	국방대학교 교육생	211명
제2차 맞춤형 위탁연수	11. 19.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20명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언론법제와 위기관리 및 언론 대응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기업 및 기관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일반인 연수는 디지털 시대의 위기관리 특징, 위기 발생 시 언론 대응방법과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2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강의 내용과 언론분쟁 사례 소개로 교육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42 |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2020.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5. 29.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30명
제2차 일반인 연수	6. 26.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73명
제3차 일반인 연수	9. 25.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55명
제4차 일반인 연수	11. 24.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68명

8. 교육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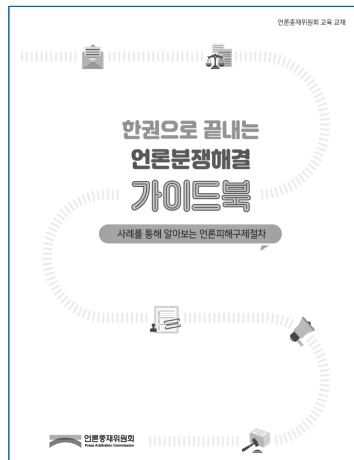
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교육교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총 3종의 신규 교재를 발간하였다. 우선 기존 일반인용 교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와 청소년용 교재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워크북>의 경우 디자인, 구성 등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최신 언론 경향에 따른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교육 교재 표지]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은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절차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한 실무형 교재로서 새롭게 발간하였다. 가이드북은 보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언론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심리기일 출석, 사건처리절차, 조정심리 후 대응방법 까지 단계별로 분쟁해결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언론대응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가이드북 교재 표지]



또한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및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들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동영상을 제작, 제공하였다. 언론인용과 청소년용으로 2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각 강좌는 편당 약 10분 내외의 영상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용 강좌는 위원회 발간물인 <언론인을 위한 언론 분쟁 Q&A>를 기본 교재로 활용하여, 언론인이 취재활동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언론 분쟁 가능성을 각종 사례와 판례로 알기 쉽게 풀었다. 청소년용 강좌는 <청소년 언론 중재스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교육동영상 스냅샷】



제작된 교육동영상은 새롭게 구축한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 강의실>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수강 관리는 물론 강의 수수료 시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강의실>]



제3절 평가

2020년 위원회는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총 14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5,123명이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였다. 2020년 한 해 위원회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규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교육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교육 방식인 대면·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강의용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도입하면서 위원회 내부 강사들로 하여금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익히도록 하고, 맞춤형 강의기법을 연구하는 등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교육수강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강의 참석 및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아울러,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6층 소회의실)을 별도로 구축하고 카메라와 마이크 등 강의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신청과 문의, 접수 등의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교육희망자들이 교육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 강의실에 참여하여 원하는 내용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였다.

둘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강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고, 언론법제와 관련하여 심화 교육이 필요한 저 연차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개최하여 언론분쟁의 쟁점과 최신 조정사례, 인터넷신문 윤리, 자율심의 사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통해서도 지역 언론인의 인격권 보호 의식 함양 및 인권 친화적 보도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기사심의기준 등 선거기사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 언론인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유형, 미디어 윤리 의식 함양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중심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힘썼다. 위원회가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모집하고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강생, 반복 수강을 통해 보다 확실한 이해를 원하는 수강자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였다. 2020년에는 우선 상대적으로 교육수요에 비해 참여 기회가 부족하였던 언론인(3차시, 총 30분)과 청소년(3차시, 총 30분)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였다. 교육동영상은 언론중재아카데미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위주로 구성하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모션그래픽 방식을 사용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교육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추가

동영상을 제작·활용할 계획이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역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교육 강의에 활용될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규 조정사례와 언론 관련 판례 등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보강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여성, 장애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방법' 등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시의적절한 교육내용 및 이용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가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교안의 질을 향상시켰다.

2021년에도 위원회는 온택트(ontact)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언론법 관련 제도와 언론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의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매체 중 하나로 자리 잡은 1인 미디어 등 신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언론분쟁 해결 및 예방을 돕는 것은 물론,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위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복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교육대상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 또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법정업무인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도 및 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언론인들이 보도과정에서 침해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침해 유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올바르게 공정한 언론문화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언론조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콘텐츠에 포함,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제 3 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 · 연구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미디어 법제 이슈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시의성 있는 언론법제 연구를 선도하고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 학술행사,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새 국회 출범에 맞춰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언론법 이슈를 특집주제로 선정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와 법제 관련 이슈들을 발굴해 점검하고,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공익을 표방한 각종 고발성 온라인 사이트들에 대한 시의성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기획하여 ‘알권리’와 ‘인격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언론법제 연구 분야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언론법제 주요 학술지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 최신 동향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해외 각국의 주요 언론관계 판결을 직접 번역 수록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을 신규로 발간하여 비교법적 언론법제 연구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와 주요 판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해 언론법제 관련 학술연구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20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여, 특히 언론이 관련 법안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2020년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을 혐오·차별의 측면과 감염병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의 공익 달성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등을 논의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1981년 계간 <언론중재> 제1호를 발간한 이후 2020년 겨울호까지 통권 제157호를 발행하였다. 위원회는 계간 <언론중재>를 통해 인격권 등 주요 언론법제 및 미디어 산업의 최신 동향, 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 등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언론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제시하고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언론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의 특집기획 코너인 ‘Focus on Media’에서는 주로 언론, 미디어

분야의 최신 이슈 중 법·정책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 위원회 주요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 등을 시의적·선제적으로 발굴해 기획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2020년 봄호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계해 유튜브 선거운동과 제21대 총선 콘텐츠 양상,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 정책적 제언을 다루었으며, 여름호에서는 새 국회 출범에 맞춰 제20대 국회의 미디어 입법 등을 결산하면서 통합방송법 1,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 과제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그에 따른 미디어 산업 변화에 주목해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구글을 둘러싼 주요 언론법제적 이슈 등을 다루었으며, AI 알고리즘의 가치중립성 확보 방안, AI 알고리즘과 포털의 뉴스 편집 등의 쟁점도 살펴보았다.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20년 봄호 (통권 154호)	<p>[Focus on Media: 유튜브 선거와 심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1) 유튜브 선거 운동과 21대 총선 콘텐츠 양상 (정원엽) (2) 선거보도에서의 표현의 자유-공직후보자 언론활동에 관한 최근 위원결정례를 포함하여 (손형섭) (3)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 정책적 제언 (안명규)</p> <p>[사건 속 법률]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유죄 판결과 방송법상 편성권의 의미 (정연우)</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무엇을 남겼나 (금준경)</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프랑스의 언론사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 (진민정)</p>
2020년 여름호 (통권 155호)	<p>[Focus on Media: 새 국회 출범에 맞춰 본 20대 국회 미디어 입법 결산] (1) 20대 국회의 인격권 이슈 및 관련 법안의 비판적 검토-형외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박미숙) (2) 통합방송법 1,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최진웅) (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 과제 검토 (김주연)</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와 방송의 공정성 논란 (정영주)</p> <p>[사건 속 법률] 코로나19 보도를 통해 본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의 향후 과제 (강소영)</p>
2020년 가을호 (통권 156호)	<p>[Focus on Media: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구글' 관련 주요 이슈 점검] (1) 선한 얼굴의 '빅브라더' 구글 - 구글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논란 (김익현) (2) '잊힐 권리' 관련 최근 소송 동향 및 이슈 (이인호) (3) 구글, 이성과 선동의 광장 사이에서 - 구글, 유튜브의 불법정보 유통과 삭제문제 (장철준)</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 이미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상팩트체크 필요성 (박주일)</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영국 명예훼손법의 '중대한 손해' 요건 (박아란)</p>
2020년 겨울호 (통권 157호)	<p>[Focus on Media: 논란의 알고리즘 신뢰할 수 있을까] (1) AI알고리즘과 가치중립성 확보 방안 (이상직) (2) 알고리즘과 뉴스편집 (송해엽) (3) 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하고 윤리적일 수 있는가 (채정화)</p> <p>[사건 속 법률] 조두순과 레바하 - 출소 전후 조두순의 신상공개 문제 (이수중)</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위챗 판결을 통해 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최승재)</p>

또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에 주목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및 이로 인한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등을 살펴보고, 미디어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들에 관한 담론을 담아보고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전을 분석하여 쟁점과 시사점 등을 다루어보았다.

‘사건 속 법률’ 코너에서는 코로나19 보도를 통해 살펴 본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의 향후 과제, 성범죄 사건 보도와 언론에 필요한 기준, 출소 전후의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해외 법제(판결)’ 코너 및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해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 발의, 영국 명예훼손법 분석, 독일 언론평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 풍자의 경계 등 해외의 최신 입법 동향과 언론법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 전달하였다.

나.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5년 창간호부터 미디어 및 인격권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끌어냈으며, 언론법제 연구 및 미디어 제도·정책 수립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향후 3년간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에 발행한 학술지의 게재논문 모두 등재학술지 논문으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상반기에 발간된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에서는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데이터 중심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데이터 시대의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의 쟁점과 새로운 역할,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 개념의 재정립 논의를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제6권 제2호에서는 “디지털 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배드파더스’ 판결, ‘디지털 교도소’ 사례 등 공익을 표방한 각종 고발성 온라인 사이트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고발이나 폭로가 공익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것인지,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보도 공익성에 대한 인식의 문

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학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언론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는 물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내 주요 학술 정보 기업, 학술정보 검색엔진서비스 등을 통해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전호에 대한 원문다운로드 및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충실한 연구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디어와 인격권」(제6권 제1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논문	최창수	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면제를 중심으로 -
	유승현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고수윤	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창영·오세욱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쟁점과 실천적 대안
연구논문	이근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이예찬·민영	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삼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정연우	방송의 아카운터빌리티와 내적 자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제6권 제2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논문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권태상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윤성욱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연구논문	차상욱	불법링크사이트의 저작권법상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연구
판례평석	김현재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2020년 11월 2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양질의 논문을 수록해 정기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등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학술적 전문성과 특수성이 높은 우수 논문 게재를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2023년 등재지 유지 채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연구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획과 면밀한 논문 심사로 등재지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진 연구자 발굴에도 집중하여 창의적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연구 분야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위원회는 해외언론법제에 대한 최근 동향 연구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언론법제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2018년부터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지 사정에 익숙한 해외 거주 학자들을 활용,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일본 등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현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7년 미투(#MeToo) 운동을 시작으로 언론의 성범죄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신상 또는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하거나 ‘피해자 비난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는 언론보도 관련 논란이 계속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 총 6개국의 성범죄 보도 문제점과 인격권 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제 및 자율규제 현황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2020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었으며,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법제 및 자율규제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연구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통계분석과 주요 판결 전문을 수록한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취재, 데스크, 보도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인격권 침해 예방자료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법제 연구 및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는 언론 관련 민사판결 236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명예훼손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사생활 침해 사례 등 주요 인격권 침해 사례와 더불어 민사판결은 아니지만 언론법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포함, 총 28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전문을 수록하였다.

마. <해외언론관계판결집>

위원회는 해외언론관련 주요 판결에 대한 심층분석 및 연구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12개 판결 원문을 수집, 번역·수록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였다. <해외언론관계판결집>에는 저작물

의 공정이용, 영국 명예훼손법, 숨겨진 사실주장 등 언론관련 논점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담겼다.

[해외언론관계판결집 제1집 수록 판례]

국가	번역자	판례
미국	고수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등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ELLIOT MCGUCKEN v. NEWSWEEK LLC
영국	최창수	대법원 Serafin v. Malkiewicz and others
독일	이수종	연방헌법재판소 BvR 442/15
		즈바이브뤼크 상급법원 NJW-RR 2015, 561
프랑스	안문희	파기원 제1민사부 10-13,715, Publié au bulletin
일본	서보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2016년(하) 제45호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민사제3부 2017년(요) 제2000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 제2민사부 2014년(와) 제309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18년(수) 제2032호
유럽사법재판소	심나리	유럽사법재판소 대합의부 C-469/17
		유럽사법재판소 제3합의부 C-18/18

바.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위원회는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PDF파일과 E-Book으로 발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였다.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사례집의 주요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례만을 수록하였다. 특히 특정 사건 및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사건내용을 편집한 후 작성, 수록하였다.

사례집에서는 조정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와 함께 법리적·학술적 의미가 있는 조정중재 사례 60건을 소개하였다. 주요 사례는 사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① 정정보도 게재 14건, ② 반론보도 게재 14건, ③ 추후보도 게재 4건, ④ 손해배상 지급 12건, ⑤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8건, ⑥ 기타 8건을 실었다. 쟁점 위주로 분석한 사례를 통해 각 사안별 다양한 피해구제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사례집을 이용하는 연구자, 일반 국민 등이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 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언론조정 현황 - 주요 언론조정사례 - 부록(연도별 통계)	PDF, E-Book (176면)

사.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에는 2019년에 처리한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안건 중 시의성이 있거나 대표성을 띠는 사례 32건을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별도의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침해 사례로 사생활 침해 7건, 명예훼손 1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1건,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1건,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1건,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1건이 있었다. 사회적 법익침해 사례는 보도윤리 위반 1건, 차별금지 위반 2건,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1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2건, 성(性) 관련 보도 1건, 자살 관련 보도 2건, 마약·약물관련 보도 2건, 폭력묘사 1건, 충격·혐오감 2건, 여론조사보도 1건, 기사형 광고 1건, 기사제목 1건이 있었다.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 시정권고 현황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시정권고 전체 목록	PDF파일 및 E-Book (278면)

아.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위원회는 각종 조정중재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한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를 책자와 PDF로 발간하였다.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에는 각종 규정과 함께 조정실무 처리절차, 사건 기록 작성가이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2.0 해설, 조사관업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 구체적인 실무처리 상세절차를 실었다.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지역사무소장 등 위원회 직원이 책자를 통해 손쉽게 업무를 파악하여 조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2020. 12.)	- 조정실무 처리절차 - 사건기록 작성가이드 - 동일법인 피신청인 사건 처리 매뉴얼 등	책자, PDF파일 (162면)

2. 토론회 개최

가. 토론회

위원회는 언론의 신뢰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다루고자 2020년 12월 1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명시적 찬성이나 반대만을 논의하는 틀에서 벗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논점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논의와 공감대가 우선 필요한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체적 논점과 의견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하고 언론분쟁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단초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변호사), 양재규 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규호 교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 감정침해와 같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징벌적 배상이 문제되었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을 토대로 3배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징벌적 배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증액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증액배상액의 규모를 하향조정(미국의 경우 2배)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안이 발의된 측면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전한 취재·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짜뉴스의 폐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 피해구조본부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공적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로 언론관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양재규 위원회 연구팀장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건에서의 위자료 인용액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로 증액하는 방식의 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이러한 사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중 없이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만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공개하였다. 토론회 영상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20. 12. 17.
장 소	프레스센터 위원회 6층 회의실
주 제	[주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논의 - 사회: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제: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박재영(서울고등법원 판사, 언론전담) 김동훈(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변호사)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 변호사)
진 행	비대면 영상녹화

[2020년도 토론회]



나.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을 혐오·차별의 측면과 감염병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의 공익 달성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11월 13일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윤성욱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혐오와 차별의 정의, 혐오의 확산 경로, 혐오표현 유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홍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중국인), 종교(신천지), 성(性) 소수자(이태원 클럽), 지역(대구·경북) 혐오 사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도록 언론이 중심을 잡고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언론은 혐오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윤리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언론보도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혐오표현에 대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제도 등을 통해 자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 교수가 맡았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취재나 추적 저널리즘, 자극적 내용 위주의 보도관행, 특정 집단 낙인 찍기 가능성,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역효과와 적극적·공익적 저널리즘의 실종 등”을 제시하였다. 유 교수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과 지나친 경쟁은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위기사태의 안정화에 심리적으로 기여하는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은 언론의 몫인 만큼, 언론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염병 보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교수는 ‘감염병보도준칙’에 ‘정파성을 떠나 신중 감염병 극복과 국민 보건 안전 측면에서 보도할 것’, ‘추적 저널리즘을 자제할 것’, ‘가짜뉴스 전달의 매개로 악용되지 말 것’, ‘감염병 관련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 꼭 필요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보도할 것’, ‘특정 계층이나 인물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감염병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언론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권태훈 SBS 기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최명진 위원회 기획팀장이 참석하였다. ‘감염병보도준칙’ 제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권태훈 SBS 기자는 “추측보도는 지양해야하지만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자기검열’은 더욱 위험하다”며 “코로나19 관련 몇몇 보도에서 표현 등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의도를 가진 왜곡이 아니라면 기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인 만큼, 언론은 메신저 및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혐오의 사회적 배경과 혐오발현의 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공공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프레임이 활용되었는데,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개인의 자유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회복력’을 키워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인권적 대응은 규제보다는 역량증진인 만큼, 언론 단체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인권 관련 안목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명진 위원회 기획팀장은 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언론보도 관련 전담 중재부 운영, 차별·혐오 관련 시정권고 심의 강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고 소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최 팀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성급한 보도로 인한 오보는 오히려 방역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언론은 재난상황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 신속성과 정확성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 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특정 집단이나 대상과 엮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를 접하는 이용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이슈, 함께 배치된 기사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기사를 해석한다”며 “자칫 언론보도가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도에 있어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일 자	2020. 11. 13.
장 소	프레스센터 위원회 6층 회의실
주 제	<p>[대주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윤성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제1주제: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제2주제: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유현재(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 신문방송학 교수)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태훈 (SBS 기자, 감염병보도준칙 제정위원장)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최명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진 행	비대면 영상녹화

[2020년도 정책토론회]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법제 및 저널리즘 분야의 간행물, 판례집, 단행본 등의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여 위원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활용도가 높은 간행물의 정기구독·비치뿐 아니라 분기별로 최신 단행본 등을 구매하여 자료의 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세종도서 학술부분 선정도서 약 200권을 지원받았다. 또한 학술콘텐츠 플랫폼인 디비피아(DBpia)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통해 다양한 학술자료의 원문 검색 및 열람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자료실 운영을 통해 중재위원 및 위원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교육수강생 등 언론법제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도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학술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언론 및 법 관련 각종 연구와 학술활동 및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언론법제 및 기타 학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실 보유 장서 등록 현황]

(2020. 12. 31. 현재 / 단위: 권)

구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계
2020년도 신규 구입	134	2	135
보유 장서	4,431	887	5,318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언론법제 연구·진흥, 국내·외 위원회 유관기관 및 관련 법·제도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해 조사·연구 문헌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토론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디어 분야의 최신 이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학술주제로 기획,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 알권리, 인격권 등의 전통적인 언론법적 이슈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제로도 발전시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학술주제로 가져와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는 토론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언론 분야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정교한 논의를 제공하는 한편, 학술적 관점 및 실무적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을 혐오·차별의 측면과 감염병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의 공익 달성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계간 〈언론중재〉,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등의 각종 학술발간물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의 현황과 예상되는 인격권 관련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검토하였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유튜브’, ‘구글’, ‘알고리즘’, ‘베드파더스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언론법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논의하였고, 법적 문제를 넘어 최근 미디어 산업 지형을 바꾸어가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도 주목하여 ‘딥페이크’, ‘넷플릭스법’ 등의 기술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다뤄 위원회 언론법제 연구의 폭을 확장하였다.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역시 ‘디지털 교도소’, ‘공익적 폭로’와 같은 시의성 높은 사회적 이슈를 연구 주제로 선정, 양질의 논문을 다수 수록하였다.

2020년 새로 발간한 〈해외언론관계관결집〉은 주요 해외언론관련판결을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언론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의 정기적인 발간을 통해 동시대 각국 법원들의 언론관련 판결 최신 법리와 그 발전, 변화 양상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초 참고자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위원회 조사연구사업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어 언론법제 관련 주요 학술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미디어와 인격권>이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발판으로 위원회는 언론법제 전문 연구분야 진흥을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연구기획 역량을 활용한 언론법제 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지원과 함께 언론법제 연구분야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학술연구발간 사업뿐만 아니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통한 언론피해구제제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의 뛰어난 연구성과물을 각계 각층의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문 및 자료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위원회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수록 논문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학술정보서비스 사이트, 학술정보 검색엔진서비스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밖의 위원회 간행물, 보고서 등의 경우 수록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위원회는 이용자 및 수요자 중심의 연구 콘텐츠를 제공하고 위원회 연구성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문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언론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위원회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방안 마련,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이용만족도 조사는 (주)리서치랩을 통해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바 있는 신청인/피신청인(이하 신청인/피신청인) 431명(신청인 223명/피신청인 208명), 상담이용자 400명, 교육수강자 405명 등 총 1,2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에 따라 온라인조사(신청인/피신청인), 전화 면접조사(상담이용자), 현장조사(교육수강자)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는 책자 발간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게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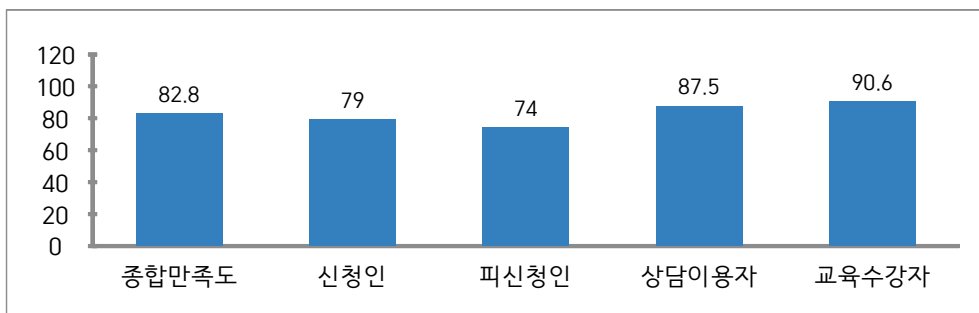
조사대상별 평가항목은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각 차원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만족도 역시 살펴보았다. 아울러 접수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인 대상으로 '상담창구', '조정(중재)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언론사 소속인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정권고제도 인지도', '시정권고제도 효과', '적극적인 시정권고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인터넷상 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인터넷 기사 수정·보완·열람차단청구 도입 필요성',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등에 관한 신청인/피신청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향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피해구제제도의 개선과제 등을 전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았다.

한편,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 자세', '문제해결 도움도' 등 총 6개 항목을 통해 종합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위원회 주관의 언론중재 아카데미 교육수강자를 통해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자료 충실성' 등을 포함한 총 5개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20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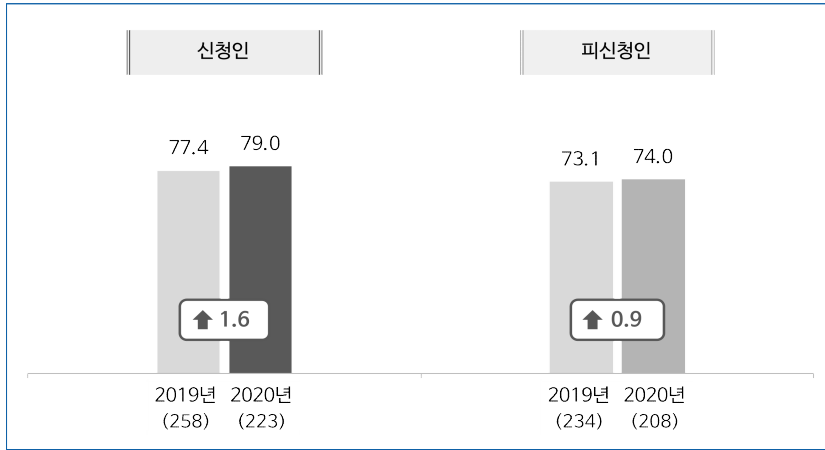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20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9.0점으로 2019년 대비 1.6점 상승하였고,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4.0점으로 2019년 대비 0.9점 상승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전년 대비 종합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상승폭이 피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87.2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4.7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0.6점) > ‘신청절차 및 방법’(78.9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9.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0.8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8.0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4.1점) 순이었다. 특히 신청인은 ‘상담창구’ 차원의 만족도(2019년 82.4점 → 2020년 87.2점 / 4.8점 상승), 피신청인은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의 만족도(2019년 74.2점 → 2020년 78.0점 / 3.8점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전년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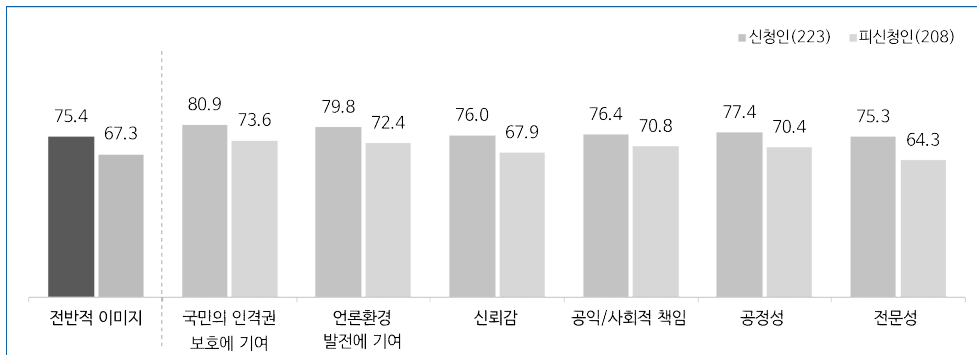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77.3점) > ‘(구두 또는 서면) 사과’(76.5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2.1점) > ‘손해배상’(60.5점)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구두 또는 서면) 사과’(69.0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67.8점) >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64.8점) > ‘손해배상’(44.5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흐름을 보였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전년도에 비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중점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점수(75.4점)가 피신청인(67.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 항목 중 ‘국민의 인격권 보호’, ‘언론환경 발전에 기여’ 등의 항목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창립 이후 40년 간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라는 양기본권의 균형 있는 조화’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당사자들 또한 높이

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의 84.3%가 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위원회 재이용 의향 설문에는 조사대상 신청인의 83.4%가 재이용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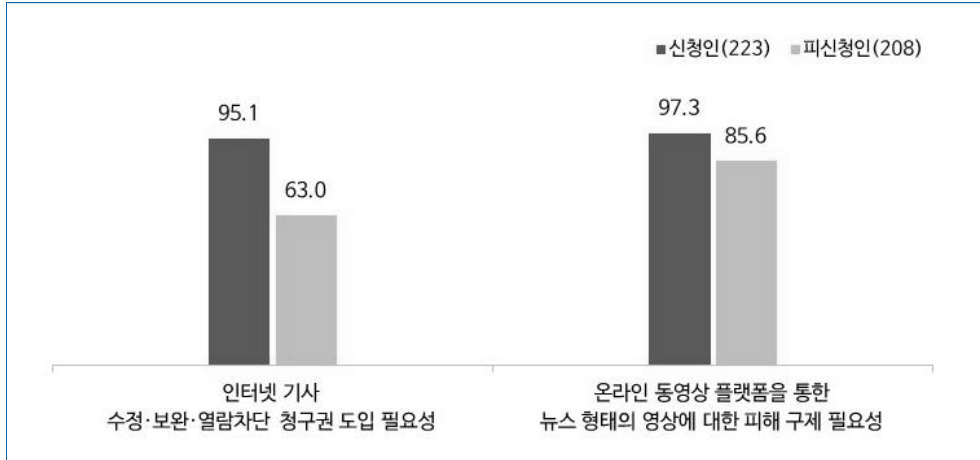
한편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지도는 71.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피신청인들은 ‘포털사이트 시정권고 대상 포함’(76.9%) > ‘적극적인 시정권고 필요성’(68.3%) > ‘시정권고제도 효과’(66.8%) > ‘시정권고 미이행 언론사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 필요성’(64.9%) > ‘시정권고 결과 외부공표 필요성’(56.7%) 순으로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시정권고제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9.6%로, 작년의 10.3%보다 0.7%p 감소했고, 포털사이트를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설문에는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2019년 8.5%에서 2020년 7.7%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사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의 99.1%, 피신청인의 73.6%)는 인터넷상 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의 95.1%, 피신청인의 63.0%가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보완·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조정 및 중재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97.3%, 피신청인의 8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언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폭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같은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행 언론중재법상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뉴스 전달 미디어, 예컨대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피해구제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언론피해 구제 필요성]

[단위: %, Base: ()]



[인터넷 기사 수정·보완·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71.3	18.4	5.4	2.2	1.3	0.0	1.3	95.1	2.2	2.7
피신청인	14.9	22.1	26.0	21.6	4.3	4.8	6.3	63.0	21.6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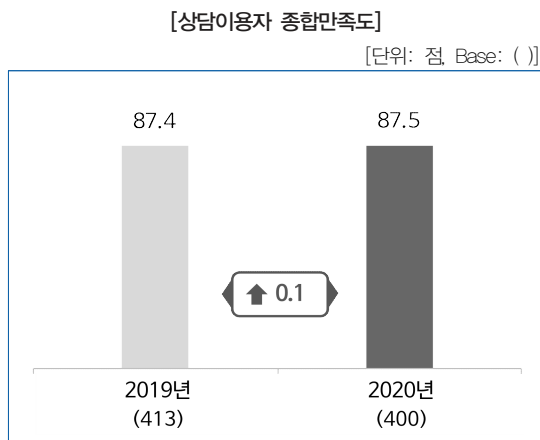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71.3	22.0	4.0	0.9	0.0	0.9	0.9	97.3	0.9	1.8
피신청인	46.2	28.8	10.6	10.1	0.5	1.4	2.4	85.6	10.1	4.3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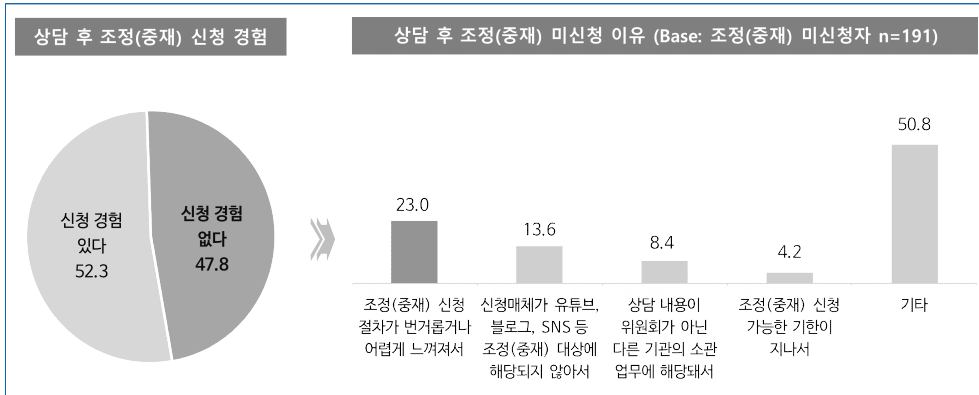
2020년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7.5점으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경청자세’가 8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원 친절성’(89.3점) > ‘적극적인 상담’(89.2점) > ‘신속한 상담’(88.6점) > ‘상담내용 신뢰성’(87.1점) > ‘문제해결 도움도’(81.6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상담원 친절성’, ‘적극적인 상담’, ‘신속한 상담’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위원회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다. 상담이용자의 52.3%가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47.8%는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상담 후 조정(중재)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져서’(23.0%) > ‘신청 매체가 조정(중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3.6%) > ‘상담 내용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돼서’(8.4%) > ‘신청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4.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담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조정(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나가는 한편,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정(중재) 대상매체 확대 및 조정(중재) 신청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어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

[단위: %, Base: 전체(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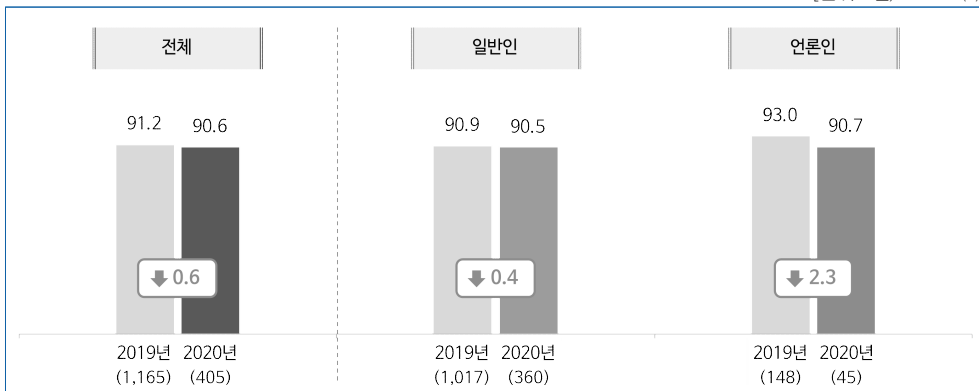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는 90.6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수강자 만족도는 90.5점, 언론인수강자는 90.7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3.4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1.4점) > ‘교육 자료의 충실성’(90.6점) > ‘제도에 대한 이해’(88.9점) > ‘주제 및 내용’(87.9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제3절

평가

2020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인/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경우 상담창구에 대한 만족도 상승(2019년 82.4점 → 2020년 87.2점)이 두드러졌고 ‘신청절차 및 방법’, ‘심리 전/후 절차 안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피신청인 역시 ‘심리 전/후 절차 안내’ 항목이 모두 상승하여 작년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언론조정신청서 작성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보도문 작성방안 등을 연구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 양측 모두 비교적 만족스러운 조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는 등의 실무적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처음 실시한 상담이용자 대상 ‘상담 후 조정(중재) 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 조사는 향후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많은 상담 이용자들이 위원회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었음에도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 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중재) 신청기한(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상담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정(중재) 대상매체 확대 및 조정(중재) 신청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향후 실제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2020년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인터넷 매체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분석에서 신청인은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로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기사의 수정·보완·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5.1%, 피신청인의 63.0%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7.3%, 피신청인의 8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침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함을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인터넷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여 권리침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0년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2019년에 이어 2020년 조사에서도 도입·실시한 개선효용도³⁾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3) ‘개선효용도 분석’(IEA, Improvement Efficiency Analysis)은 개선 필요 과제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만족률, 불만율 그리고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효용도’가 클수록 개선의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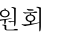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한 해였다. 위원회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특히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제도 관련 콘텐츠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정보들이 이용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위원회에 대한 친근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제작·배포하고 인포그래픽 영상을 활용한 옥외 광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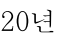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국내·외 주요 미디어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를 신설하고, 차별문화 해소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언론분쟁조정기관으로서 인격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위원회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언론조정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광고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지역중재부 위치 정보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미디어와 법률, 문화 콘텐츠, 위원회 활동 소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월 발간(3천 부)하는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전국 법원, 문화원,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 매월 수록한 콘텐츠를 온라인 뉴스레터로도 제작해 월평균 약 4천 명의 수신자에게 발송하였다.

2020년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국내·외 주요 미디어 이슈를 조망하는 코너를 신설하고, 현직 기자 및 저널리즘 학자의 특별기고를 게재해 주요 미디어 현안과 쟁점을 다루었다. 또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확산 예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보다 많은 독자들이 대외홍보지를 통해 위원회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학, 영화 등 가독성 높은 코너를 배치하고, 게재한 기고문을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채널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게시하여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였다.

[2020년 발행 <언론  사람>]



2. 광고 집행

위원회는 지하철 음성광고, 옥외전광판 광고 등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였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일반 국민 대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시청역 음성안내광고를 11개월간 지속 실시하였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 홍대,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옥외전광판에 위원회 업무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영상 광고를 노출시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 강원, 제주지역에도 인포그래픽 동영상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방문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의 위원회 지역중재부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체광고 집행내역]

구분	매 체 명		집행기간	비고
서울	지하철 음성 안내광고	2호선 시청역	2. 1. ~ 6. 30.(5개월)	7초 음성안내
		1호선 시청역	7. 1. ~ 11. 30.(5개월)	
	서울 홍대 지은빌딩 · 서울디지털C 신건빌딩	4. 6. ~ 5. 6.(1개월)	20초 캠페인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9. 16. ~ 12. 15.(3개월)		
	월간 <헌정>	9 ~ 11월호(3개월)		
지역	광주송정역 앞 은성빌딩 전광판		5. 1. ~ 5. 31.(1개월)	20초 캠페인
	강원 춘천시 중앙로 45 제일은행빌딩 전광판		8. 12. ~ 9. 11.(1개월)	
	제주시 중앙로 54 전광판		8. 12. ~ 9. 11.(1개월)	

3.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위원회는 공식 블로그 ‘공감’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면 활동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된 한 해였다. 위원회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사례, 언론관련 판결, 최신 미디어 이슈 등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두터운 이용자층을 확보하였다.

2020년 위원회 공식블로그의 월 평균 방문횟수는 약 3만 2천 건을 기록하였고,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도 약 2만 8천 명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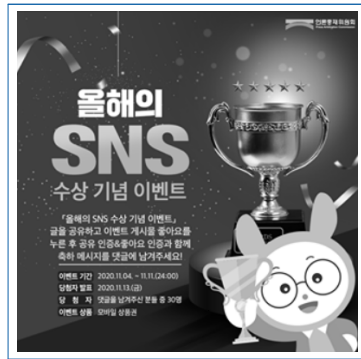
위원회는 온라인 홍보매체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등으로 콘텐츠 제작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진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나타난 혐오표현 및 가짜뉴스 문제나 코로나19 보도 관련 조정사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 허위정보 및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9년 위원회 공식블로그 ‘공감’이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6회 올해의 SNS’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2020년 올해의 SNS 최우수상 수상]



위원회는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위원회 캐릭터 ‘어니’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위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2020년 세 번째로 제작·배포된 어니 이모티콘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에티켓을 주요 테마로 담았다. 어니 이모티콘은 배포 시마다 추가 배포 요청이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약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수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 캐릭터 '어니' 이모티콘]



4.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기능 개선

위원회는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자신청시스템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론조정중재신청서 기재 내용을 작성한 후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신청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수 기재 사항 및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페이지의 UI를 업그레이드 한 점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된 정보들이 바로 조정중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가 위원회 홈페이지라는 점을 고려해 계절별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변화를 주어 친밀감을 높이고, 위원회 최신 소식을 배너로 제작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등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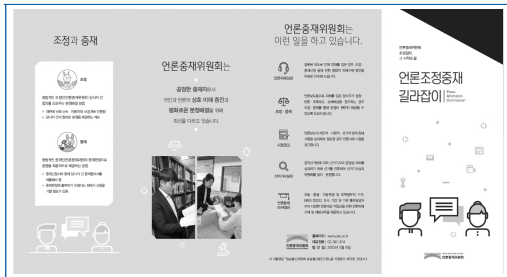
5.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중재부 운용, 각종 발간물 출간 소식 등 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한 18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총 220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외 홍보지 광고지면을 통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학술지 논문 공모 일정을 전하는 등 위원회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상담실 및 조정심리 대기실 등에 비치해 위원회를 직접 찾은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1년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엠블럼과 일러스트를 사전 제작하였다. 기념 엠블럼과 일러스트는 2021년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기타 위원회 홍보물과 각종 기념사업 진행 시 활용할 예정이다.

[홍보 리플릿]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소통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에 매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발간물인 대외홍보지를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 언론법제 관련 최신 동향과 다양한 주제의 문화콘텐츠를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 여러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동일한 포맷으로 유통 경로만 달리하여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와 매체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형식으로 가공해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콘텐츠 홍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이동 반경이 출·퇴근 등 최소한의 일상 활동에 머문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하철 음성안내, 도심 오피스 밀집지역의 옥외전광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였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위원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 강원, 제주지역 사무소 인근 중심지에 인포그래픽 영상 광고를 송출하였다. 그밖에도 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기능 개선,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포털사이트 내 지역중재부 위치 정보 업데이트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2021년에도 위원회는 친밀하고 알기 쉬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온택트(ontact) 시대 매체 환경에서 이용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이용자 중심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은 홍보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제 6 장

기타 주요활동

1.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리뉴얼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재개발

위원회는 지난 2010년 주요 법정업무인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사관과 중재위원이 사용하는 전자업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Active-X의 보안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19년 위원회 그룹웨어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도록 10년 전 구축한 업무시스템 리뉴얼(renewal)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용자별(조사관/중재위원)로 분리 운영되던 시스템을 한데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9년 시스템 및 그룹웨어 고도화 당시 구축한 클라우드 환경에 ‘통합 조정중재시스템’을 안착시켜 업무 처리속도를 높이고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내 독자적인 전자결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별도의 전자결재 솔루션이 아닌 직원 그룹웨어 내의 결재 솔루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스템 비호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 홈

페이지 내 전자조정중재신청 페이지와도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시스템 사용자 뿐 아니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

날 짜	내 용
2020. 4.	입찰공고
2020. 5.	적합성평가
2020. 6.	계약체결
2020. 10.	중간보고회
2020. 12.	시스템 검수
2021. 1. ~ 2.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개시 및 안정화

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2019년 그룹웨어를 비롯한 각 업무시스템(조사관/중재위원)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더욱 보안이 강화된 외부 접속방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접속의 번거로움과 사용방법의 어려움,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등 각종 불편함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던 기존 방식(SSO)에 더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회성 계정(OTID)을 추가로 생성 받아 접속하는 추가 인증 솔루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각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운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그룹웨어에도 추가 인증수단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완료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물리적 제약 없이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위원회 법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추가 인증수단 설치 현황]

날짜	내 용
2020. 8.	그룹웨어(PC버전) 및 조사관/중재위원 시스템 추가인증수단 설치
2020. 12.	모바일 그룹웨어 및 통합조정중재시스템 추가인증수단 설치

다. 평가

‘통합 조정중재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위원회는 사용자별로 분리되었던 업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꾀한 것은 물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접속 방식을 보완하면서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 역시 강화하는 등 시스템 운용 및 이용상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조정중재신청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통합 조정중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접근도를 크게 높였다. 향후 위원회는 '통합 조정중재시스템'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2020년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예정되었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중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 1회만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7월 7일 진행된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는 유동성 전라일보 대표이사, 임환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문영기 전북CBS 본부장, 송기원 전주MBC 대표이사,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 이재강 KBS전주방송총국장 등 전북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위원회 측에서는 이석형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중재부 김상곤 중재부장, 김성중, 황선철, 김선남, 정재훈 중재위원이 참석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북지역의 언론 현안 등을 공유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소개, 기사심의 및 언론인 교육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언론 현안, 언론분쟁예방 및 올바른 선거보도 문화 조성을 위한 언론인 대상 교육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 중심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도 당부해나갈 계획이다.

3. '온택트'(ontact) 시대 맞춤형 내부교육 실시

2020년 위원회는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비롯해 어학 능력 개발, 학위취득 지원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온택트'(ontact) 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직원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수강 방법을 도모하였다.

위원회는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원회 전 직원은 온라인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하면서 성(性)인지 감수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직원의 언론조정 업무 수행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 교육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비롯한 다수의 조정실무 경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언론조정실무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과 언론법제의 최신 이슈 등을 공유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법제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가 잠시 완화되었던 여름에는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직무관련교육(회계 관련 교육, 직급 관련 교육, 사무업무 관련 실무 교육, 계약업무일반 등) 및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교육 연속성을 유지하여, 위원회 직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무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직원 주요 교육 실시 현황]

구분	날짜	주제	강사
감사교육	2. 3. ~ 2. 7.	감사실무자과정 공공기관반	감사교육원
폭력예방	3. 28. ~ 4. 22.	4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양성평등교육(온라인)	러닝뱅크(사이버교육)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5. 7. ~ 5. 20.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11. 19. ~ 11. 30.	4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양성평등교육(온라인)	러닝뱅크(사이버교육)
직무 심화교육	11. 20. ~ 12. 4.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 관련 전문 교육 (비대면 3회 실시)	사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직원
부패방지 교육	12. 11. ~ 12. 21.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 감사관실

이 밖에도 2020년에는 언론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위원회 언론조정실무와 업무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연구모임인 ‘언론판례연구회’와 급변하는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는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연구모임 활동현황]

연구모임명	활동내용
언론판례연구회	- 국내 언론 관련 리딩 판례 및 최신 판례 연구 - 주요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적 토의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 연구모임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생태계 연구 위원회 법정 업무를 변화하는 생태계에 접목할 방법 연구

4. 사회공헌활동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여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위원회를 비롯한 프레스센터 입주 20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헌혈 행사(총 3회)에도 서울사무처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혈용 혈액보유량의 급격한 감소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동참하였다.

위원회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건네는 등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일 자	항목	세부내용
2. 10. ~ 2. 12.	헌혈	프레스센터 내 입주기관 공동 헌혈행사 참여
3. 4.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기부활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000원 기부
4. 16. ~ 4. 17.	헌혈	프레스센터 내 입주기관 공동 헌혈행사 참여
10. 12. ~ 10. 13.	헌혈	프레스센터 내 입주기관 공동 헌혈행사 참여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제4부

2021년도 업무계획



제 1 장

2021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 언론피해구제수단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 요구 증가

- 제21대 국회 개원(2020. 5. 30.)과 함께 언론피해구제수단 추가 및 기존 피해구제수단 실효성 강화(열람차단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시정명령 제도·인터넷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등 도입,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위치 등 규정, 정정보도 방식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
- 2020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매체 특성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수단 마련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더불어민주당 이상직·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제기되는 등,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강화된 언론피해구제수단 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제21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피해구제수단 관련 주요 내용]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정청래 의원	'20. 6. 9.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 침해 시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결정
정청래 의원	'20. 7. 13.	- 중재위원 추천규정 보완 : 법관, 변호사,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비율을 5분의 1 이상 → 10분의 1 이하로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 법관 추천권자 대법원장으로 격상 : 추천권자에 신문협회, 방송협회, 언론 관련학회, 시민단체 추가 - 정정보도등 보도 시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과 동일하게 보도
신현영 의원	'20. 7. 31.	- 열람차단 정의 신설 -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 열람차단청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 의원	'20. 8. 7.	- 정정보도등 청구기한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서 1년으로,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문체부에 시정명령 요청
박광온 의원	'20. 8. 20.	- 정정보도등 보도 시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지면의 첫 면에 보도
김영호 의원	'20. 11. 19.	- 정정보도등 보도 시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
김원이 의원	'20. 12. 1.	-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삭제청구권 신설 -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에 삭제청구권 포함 - 위원회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언론사 등에게 준수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 없을 시 언론사 등은 이를 따를 것 규정

● 또한 기존 언론피해구제수단의 효과가 도달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 (ex. 기존 형사절차 외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쟁송절차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청구권 확대 적용)할 필요성, 중재부에 따른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 실무상 처리절차 및 관행의 통일성·엄밀성 제고를 위한 검토 논의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 시급

● 아울러 2020년 역대 최대의 언론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3,924건 / 세월호 관련 대량 언론조정신청사건 제외)하는 등 언론조정신청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재위원 정원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피해구제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제21대 국회에서도 중재위원 정원을 증원(90명→120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이 재발의된 만큼, 중재부 증설을 통한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재부 부재(不在) 지역 (ex. 인천광역시) 당사자들이 권리행사 방해요소가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속 추진 필요

* 2020년 경기중재부가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신청사건 408건(2020. 12. 14. 현재) 가운데 인천광역시 및 그 인근 지역 소재 언론사 대상 사건이 196건(전체 사건의 48%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소재 언론사 대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인근 지역 당사자들로부터 원 거리 출석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

2. 운영재원 변경 등 위원회 관련 법 제도 · 정책 변화 가능성 제기

-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언론중재법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 지원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 2021년에는 위원회 운영재원(현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변경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위원회 운영재원 변경 관련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 기관 혹은 예산 성격 등과는 무관하게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중요
- 한편, 2021년에는 정부여당 차원의 부처별 미디어정책 부서 및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미디어스 2020. 11. 24. 자 「민주당 '미디어혁신위' 준비TF 이달 내 추진」 제하 기사 참조)될 것으로 예상됨. 미디어 법제 및 정책 관련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3. 중재위원 조정실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임기만료에 따른 중재위원 대폭 교체(2021. 8. 31. 자 49명)가 예정되어 있고, 개별 시스템으로 나누어 운용했던 조사관 업무시스템 및 중재위원 업무시스템을 통합·개발한 '조정중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 활용됨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중재위원의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신임 위촉 중재위원 및 기존 중재위원들의 조정중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습, 교육 프로그램(ex. 시스템 이용방법 등) 등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 있음

4. 위원회 창립 40주년,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

- 2021년은 위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발전방향 및 비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창립 40주년을 맞아 위원회 성취와 과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획 필요

5. 매체 특성 및 사회적 이슈에 조응하는 시정권고 심의제도 운용 요구

- 언론보도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지면매체(신문, 잡지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방식 및 결정문 내용과는 차별화 된, 인터넷 매체 특성에 부합하는 시정권고 심의제도 운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또한, 급격한 정치·문화·사회 변동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세대 갈등, 성(性) 평등 문제, 코로나19 확산, 재난 발생 등)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해 특정 개인 혹은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혐오, 배제,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이슈도 돌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의침해 양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심 필요

6. 2021년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설치·운영

- 2021년은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연이어 설치, 운영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됨

[2021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일정]

구분	선거일	설치·운영기간
2021년 재·보궐선거	2021. 4. 7.	2021. 2. 6.(토) ~ 2021. 5. 7.(금)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3. 9.	2021. 7. 11.(일) ~ 2022. 4. 8.(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6. 1.	2022. 1. 31.(월) ~ 2022. 7. 1.(금)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가 검토되고 있어 선심위 설치 및 운영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언론이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을 스스로 준수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심위의 불공정 선거보도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함. 언론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선거보도 관련 안내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수립 필요
- 아울러, 2021년과 같이 주요 선거일정이 연속되는 경우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설로 선거 전·후 특정 기간에만 설치·운영·종료가 반복되는 선심위의 운용상 비효율성 문제 및 불공정 선거보도심의의 형평성·일관성·효율성 문제가 반복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노력 지속 필요

7. 언론피해구제·분쟁예방 교육 및 언론법제 연구 관련 국내 유일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무 인식

-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언론법제 관련 연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 관련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임. 이에 따라 위원회 교육 수요자 및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충실한 계획수립 중요
- 2021년에도 상당 기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상황 하에서도 교육 수요자의 편의와 필요 및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마련 중요
- 학술지 <미디어와 인권권>이 등재지로 승격되는 등 위원회 언론법제 연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위원회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지원 및 요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학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인 연구 자원 투입 필요

8. 국내·외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사업 및 근무환경 변화

-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은 각종 국내·외 사업(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국제 컨퍼런스 참석, 중재위원 연수 등) 연기·취소, 대면 중심 사업의 비대면 전환(언론피해구제교육 등), 근무환경 변화(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본격 실시) 등 위원회 사업 및 근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의 안정적 통제 및 관리는 2021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당분간 위원회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 예상치 못한 변동 및 운용상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과제(엄정한 복무관리 등) 역시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비대면 확산,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무환경 역시 유연성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됨. 달라진 사업 환경 및 근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실행 방안 마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

9. 사무처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인재개발 지원

- 임금피크전문직 전환자 추가(2020. 12. 31. 현재 2명에서 2021. 7. 1.부터 총 4명으로 증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무처 인적 자원 구성 및 배치에 변화가 예상됨. 인력 운용상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인력 관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각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10. 사무 환경 개선 필요성 증가

- 일부 지역사무소(경기사무소 등)의 경우 언론조정신청사건 처리건수 대비 조정심리공간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방음문제 및 업무 능력 저하, 민원인 대기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당사자 이용만족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언론조정심리 진행 및 당사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11. 조직문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성원 간 소통 강화

- 직원 신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사무처 직제·구성·인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사무처 내 공식적·비공식적 행사, 소모임 등을 통해 사무처 직원 간 교류 및 소통이 진행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여파 등으로 인해 사무처 구성원 간 다양한 교류가 사실상 어려웠음
- 사무처 내 직급 간, 세대 간,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탈피, 일하고 싶은 직장, 일·가정 양립, 노사 존중 및 화합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무처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 ● 제 2 장

2021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 미디어 법제 ·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실효적 · 능동적 · 선제적 대응

- 언론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및 규정 정비 추진
 - 매체 특성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수단 도입 및 언론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 등 요구 및 실무상 필요에 적극 호응, 국회 ·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중재부 부족으로 인한 당사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언론조정신청사건 처리를 위한 ‘중재위원 정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노력 지속 추진
 - 또한 언론조정중재사건처리 관련 위원회 각종 내부 규정(ex. 「정정보도문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실무상 처리절차 및 관행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등 언론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 및 처리 효율성 · 엄밀성 제고 추진
- 운영재원 관련 논의 및 미디어 정책 환경 변화 선제적 대비
 - 위원회 운영재원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에 대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핵심가치인 독립성 · 중립성 보장 방안이 언론중재법 등 관련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부처별 미디어정책 부서 및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 등에 관한 논의 및 실질적인 결과 도출 노력이 정부여당 및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 진행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하면서 필요 시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위원회 입장 및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준비

● **조정중재업무시스템 정착 및 조정실무 전문성 강화**

- 전체 중재위원 중 절반 가량의 교체(2021. 8. 31. 49명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조사관 및 중재위원 업무통합시스템인 ‘조정중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위촉되는 중재위원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사건 세부 처리절차 안내 등 조정실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원활한 언론조정신청사건처리 지원을 위해 전체 중재위원 대상으로 정기·비정기적인 ‘조정중재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교육 등 실시

● **창립 40주년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위원회 각종 발간물, 학술행사(토론회, 좌담회 등) 및 내부 구성원 대상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창립 40주년의 의미와 그동안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해결과제와 세계 유일의 언론분쟁 전문해결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

2. 심의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모색

● **시정권고심의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시정권고 결정 사후 효과를 확인 및 제고하는 방안으로 시정권고 결정 대상 언론사의 결정내용 수용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용률을 점검하여 반복적 위반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시정권고심의 업무 연속성 및 심의 전문성 향상, 법익침해 언론보도 심의 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심의 절차 및 실무상 유의점, ‘시정권고시스템’ 사용법 등 전문 실무 교육 실시
- 언론유관단체 및 위원회 교육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매체별·지역별·규모별 언론사 대상 시정권고심의제도 관련 교육을 대면·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법익침해 언론보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 실시 방안 마련

- 새로운 법익 침해에 대응하는 심의기준 보완
 - 정치·사회·문화 급변 등에 따라 많은 양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와 함께, 시정권고 심의기준 변동사항 및 신규 필요사항을 수시로 검토·보강하여 최신화 유지
- 불공정 선거보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선거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선거 관련 보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논란이 조기에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련 유관기관 및 위원회 교육·홍보부서 등과 협업 노력을 기울여 언론사 대상 선거기사심의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진행 추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선거 전·후 특정 기간에만 설치·운영·종료가 반복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비효율성 문제 및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일관성·효율성 논란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발의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 달성 노력 지속

3.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연구 콘텐츠 제공

- 온택트(Ontact) 시대 맞춤형·실속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운용
 -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대면·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도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예방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기반 시설(온라인 화상 장비 등)을 확충·보강하고, 온라인 배포·이용에 용이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
 -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활용 및 정보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 현상 또한 급증하고 있어 올바른 미디어 활용 및 소비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대. 언론보도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세대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미디어 교육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위원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수요 창출

- 언론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법 개정의 당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
- 사용자 친화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위원회 업무 특성상 법률용어나 법적 절차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효과적인 홍보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가급적 쉽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한편, 이용자들의 세대·직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위원회를 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각 지역에서도 위원회를 통한 언론피해회복 요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무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사무소의 홍보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각 지역 언론 현황 및 지역적 특색에 맞는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홍보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지역별 맞춤형 홍보사업 전개
 -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외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계기홍보를 시행하여 언론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과 업적 등을 국민들에게 확산
- 언론법제 연구 분야 및 미디어 제도·정책 수립 지원 기능 활성화
 - 위원회는 국내 언론유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등재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자체 연구역량 및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법제 연구 분야 진흥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인식하고, 연구기획 역량을 활용한 언론법제 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지원, 언론법제 연구 분야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활동 강화
 - 아울러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7개월 사이에 8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개선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언론피해구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학술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 추진 및 학계·언론계 전반에 걸친 공감대 확산

4. 인적·물적 자원의 계발·운용·관리 효율 증진을 통한 성과 창출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방향 및 근무환경 변화 대응방안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한 등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 각종 집합대면·해외사업 등 실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관리·통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지연 상황 등 각 부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무상 불필요한 관행, 낭비성 요소 등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등의 사업 효율 증진 계기로 전향적 활용
 -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재택근무 전격 도입, 시차출퇴근제 일상화)가 향후에도 지속·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복무관리 차원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근무환경 유연화로 기대되는 장점은 극대화하되 부작용·단점은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실무 조치 방안 강구

- 인적 자원 계발 및 물적 환경 개선을 통한 구성원·이용자 만족도 제고
 - 각종 채용 및 임금피크전문직 전환자 증가 등에 따라 사무처 인적 자원 구성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무처 각 구성원의 능력 및 선호, 직무능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관리 세부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적 자원 운용 도모
 - 서울 및 일부 지역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인 공간 및 사무 환경 관련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고려해 환경 개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노후화 된 각종 장비 등은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 예산절감 및 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 등 이용자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언론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다채널 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업그레이드 추진
 - 직급 간, 세대 간, 노사 간 정기·비정기 교류기회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마련, 전문가를 통한 조직문화 점검 기회 마련 등을 통해 직장생활 고충, 업무상 개선 필요사항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한편, 조직 내 산재한 오해와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부 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20년 12월 말 현재)

임원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이석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 변호사



부위원장 **박태경**

- 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 KTV 방송제작부장
- (현) (재)세종문화회관 비상임이사



부위원장 **최홍운**

- 서울신문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이사대우
-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김철웅**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



감사 **이미현**

-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집행이사
- (현) 변호사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신현석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신종열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창섭

- 서울지법 부장판사
- (현) 변호사



차성진

- 한겨레신문 국장, 상임이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이민규

- 여론집중도조사위원
- 한국언론학회 회장
- (현)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우진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 (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금교수



권정숙

- 한겨레신문 방송미디어부장
- (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 (현)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



조성은

- 여성가족부 공보관
- 한국소통학회 부회장
- (현)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장



황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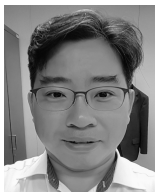
- 매일경제신문 부장
- (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
- (현) 경기대 교수



이장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대한변협 사무총장
- (현) 변호사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김 양 호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강 화 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 선 중

- 속초지원 지원장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현) 변호사



김 지 영

- 경향신문 편집국장, 편집인(상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 (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초빙교수



윤 능 호

- MBC 국장
- KTV 국민방송 방송자문위원
- (현) NS홈쇼핑 사외이사



정 은 령

-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
- (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오 재 석

- 연합뉴스 편집국장, 상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 (현) SAM 컨설팅 고문



양 호 산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현) 변호사



임 선 영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 (현) 변호사



곽 란 주

- 서울동부지검, 부천지청, 천안지청 검사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현) 변호사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중재부장
이민수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정도영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희

- 동아일보 국제부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 (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김철웅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



박종권

- 중앙일보 논설위원
- JTBC 시청자·정책·심의실장
- (현) 호서대 시용합대학 교수



박치형

- EBS 방송제작본부장, 부사장
- (현)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 (현) 대전대 객원교수



왕미양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현) 변호사



임상혁

-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위원
- (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변호사



윤용근

- (현) 변호사



김영주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 (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 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이 형 주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박 태 안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석 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 변호사



서 경 주

- MBC 라디오본부장
-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 성공회대 외래교수



박 태 경

- 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 KTV 방송제작부장
- (현) (재)세종문화회관 비상임이사



손 수 호

- 경향신문 기자
- 국민일보 부국장, 논설위원
-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위원



안 승 국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 변호사



윤 영 미

-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 미디어팀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현)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강 소 영

- 코리아헤럴드 기자
- HPN PR 대행사 대표
- (현)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최 승 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현) 변호사

부 산 중 재 부		대 구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전 상 훈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 (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손 현 찬

- 울산지법 부장판사
- (현)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이 범 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동아대 교수



최 미 화

- 매일신문 논설실장
- (현) 재단법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장 병 운

- 국제신문 기자, 논설고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부이사장



양 정 혜

- (현)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 정 숙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 (현) 변호사



이 동 원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 연구법관
- (현) 변호사



이 미 현

-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집행이사
- (현) 변호사



권 장 원

- KBS 뉴스옴부즈맨 위원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연구회장
(집행이사)
- (현) 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 주 중 재 부		대 전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길성

- 광주지법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 (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양태경

- 제주지법 부장판사
-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봉철

- 코래드 부국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 (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외협력처장



이노신

- (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조정위원
- (현) 충남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위원
- (현)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조경완

- 광주일보 기자, 편집국장
- 제1, 2회 서재필 언론인상 심사위원장
- (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진아

-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
- (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한선

- 무등일보 기자
- 전남대 연구교수
- (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주영

- (현) 변호사



서애련

- 서울남부지검 검사
- (현) 변호사



성민정

- 미국 뉴욕시립대 조교수
- (현) 문체부 홍보분과 평가위원
- (현)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경 기 중 재 부		강 원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이 건 배

- 광주지법 부장판사
- (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복 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최 흥 운

- 서울신문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이사대우
-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이 광 식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현) 강릉인문학연구소장



남 궁 덕

-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과학벤처총기부장
-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상무)
- (현) 포항공과대 대우교수



김 학 성

-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회장
-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 정 범

-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변호사



김 경 희

- 중앙일보 기자
- (현) 강원언론학회 회장
- (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장 미 애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현) 경기도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 변호사



이 용 재

- (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현) 변호사

충 북 중 재 부		전 북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김 성 수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상 곤

- 광주지법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 (현)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 영 일

-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 성 중

- 전라일보 기자, 편집부장, 논설위원
- 전북일보 기자,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 연 수

- (현) 변호사



황 선 철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현) 변호사



류 성 응

- (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 변호사



김 정 아

- (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천 현 숙

- 칼슨마케팅그룹코리아 이사
- 크리에이티브부띠꼬 메딕 이사
- (현)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 제 훈

- 대전지검 검사
- (현) 변호사

경 남 중 재 부		제 주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조 윤 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현 롱

-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현) 제주지법 부장판사



안 차 수

- 부울경언론학회 회장
-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 영 철

-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
- (사) 제주언론학회 초대회장
- (현) 제주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윤 희 각

- 국민일보, 동아일보 기자
- (현) 부산외국어대 만오교양대학 교수



김 건 일

- 제주MBC 보도제작국장
- 한라일보사 사장



조 정 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 (현) 변호사



고 창 범

- 제민일보 논설위원
- (현) (주)제주풍력 상무



김 영 미

- (현) 경남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 (현) 변호사



강 문 숙

- LG그룹 법무팀
- (현) 변호사

2.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연혁

- 1981. 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 4.29. 언론중재위원회 현관식(사무국)
-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 4. 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
- 1985. 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 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1. 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993. 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 1999. 4. 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
-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2005. 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 4. 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 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 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4. 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 2015. 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2017. 1. 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재유형 다양화
- 2017. 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 2018. 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 취임

4. 기구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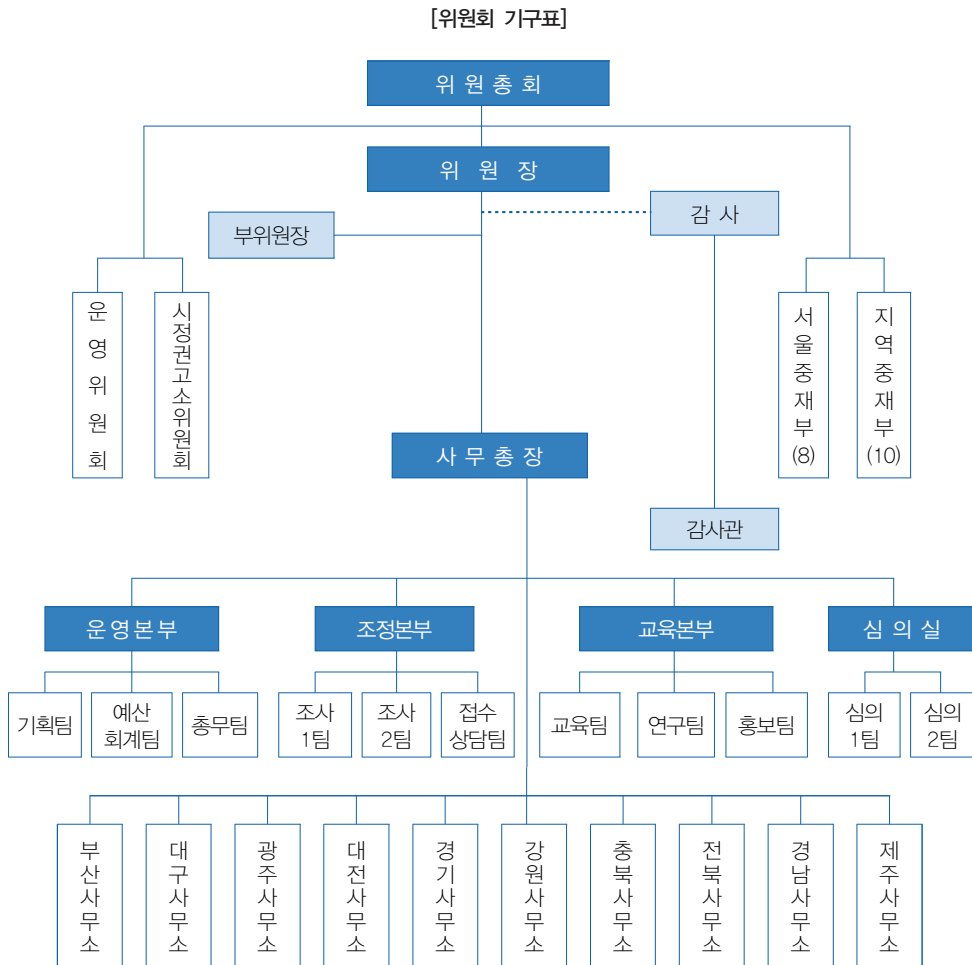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사무처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20년 12월 말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91	92
현 원	-	91	91



5. 2020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7,254	7,214	40
경상비	경상비	2,408	2,270	138
사업비	조정 및 심의사업	2,409	2,307	102
	조사연구사업	330	202	128
	홍보 및 교육사업	352	326	26
	소계	3,091	2,835	256
합계		12,753	12,319	434

6. 제21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정청래 의원	2020. 6. 9. 의안번호 2100294	-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김영주 의원	2020. 6. 23. 의안번호 2100874	- 중재위원 정원을 현행 '40명 이상 90명 이내'에서 '120명'으로 확대(안 제7조제3항)
정청래 의원	2016. 7. 13. 의안번호 2101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중 법관, 변호사,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의 비율을 현행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하로 변경(안 제7조제3항)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격상(안 제7조제3항제1호) ·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에서 추천(안 제7조제3항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안 제7조제3항제4호) - 중재위원 결격 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안 제8조제2항제2호) ·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안 제8조제2항제3호)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안 제8조제2항제6호 신설)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안 제8조제2항제7호 신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 -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수용 시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게재(안 제15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신현영 의원	2020. 7. 31. 의안번호 2102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정청래 의원	2020. 8. 7. 의안번호 210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보도등 청구기한을 현행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각각 확대(안 제14조제1항) -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 시 즉시 상대방에게 고지(안 제18조제7항 신설) - 중재위원회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함을 심의하여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안 제33조제1항 신설,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명령(안 제33조제2항 신설)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등에는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항제5호 신설)
박광운 의원	2020. 8. 20. 의안번호 2103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지면의 첫 면(인터넷 매체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6항제1호~4호 신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항제2의2호 신설)
김영호 의원	2020. 11. 19. 의안번호 2105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고 이를 언론사등이 수용 시 협의 대상에서 크기는 제외(안 제15조제3항)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함(안 제15조제6항)
김원이 의원	2020. 12. 1. 의안번호 2105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격권 침해 받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할 수 있고, 청구 수용 시 언론사 등은 해당 언론보도 등을 삭제하고 인격권 침해 방지 조치 시행(안 제17조의3제3항) -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 삭제청구 포함(안 제18조 및 제24조) - 위원회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 마련하고 언론사 등에 이의 준수 권고하며 언론사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을 시 따를 것 규정(안 제17조의4 신설)

7. 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질의 내용	질의의원
<p>언론사의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문체부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무한 등 고충처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언론의 자율적인 피해자 구제 기능 제고를 위해 위원회가 고충처리인 제도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문체부가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p>	<p>김승원 의원</p>
<p>위원회의 상담매체유형 현황, 조정신청 피신청인 매체유형 현황,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부 인터넷 신문의 경우 경쟁력 우위를 위해 지극적인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이것이 순식간에 전파되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음. 인터넷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p>	<p>김예지 의원</p>
<p>허위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필요</p>	<p>이상직 의원</p>
<p>중재위원 정원이 90명임에도 광역시인 울산에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울산중재부 설치를 위한 방안 강구</p>	<p>이상헌 의원</p>
<p>인터넷 기반 매체 특성상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의 보도가 계속 인터넷상에 남아 검색되거나 확산된다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검색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제화 필요</p>	<p>임오경 의원</p>

8. 2020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2019년 선거기사심의편람	2020. 1. 31.	250부
2	2019년도 연간보고서	2020. 2. 28.	300부
3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54호)	2020. 3. 30.	800부
4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2020. 3. 30.	PDF / E-Book
5	[일반인용]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2020. 4. 29.	5,000부
6	[청소년용]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워크북	2020. 4. 29.	5,000부
7	[신규 가이드북]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2020. 4. 29.	5,000부
8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2020. 5. 31.	PDF / E-Book
9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2020. 6. 30.	650부
10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제155호)	2020. 6. 30.	800부
11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20. 7. 31.	900부
1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20. 7. 31.	PDF / E-BOOK
13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제156호)	2020. 6. 30.	800부
14	202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20. 12. 28.	200부
15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제157호)	2020. 12. 31.	800부
16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2020. 12. 31.	650부
17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3,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0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 Annual Report

인 쇄 일 2021년 2월 25일
발 행 일 2021년 2월 28일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 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